

제410회국회
(정기회)

국 방 위 원 회 회 의 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10월5일(목)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4)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9)
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0)
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1)
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7)
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82)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4)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7)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5)
10.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9)
1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7)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8)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8)
1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8)
1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3)
16.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7)
1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7)
1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5)
1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2)
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8)
21.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6)
22.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7)
23.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70)
24.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4)
2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5)
2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9)
2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4)
2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4934)

상정된 안건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4) 2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9) 3
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0) 3
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1) 3
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7) 3
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82) ... 3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4) 3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7) 3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5) 3
10.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9) 3
1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7) 3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8) ... 3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8) 3
1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8) 3
1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3) 3
16.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7) 3
1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7) 3
1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5) 3
1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2) 3
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8) ... 3
21.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6) 3
22.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7) 3
23.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70) 3
24.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4) 3
2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5) 3
2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9) 3
2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4) 3
2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4) 3

(10시01분 개의)

○소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국방위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4)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39)
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0)
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1)
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57)
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82)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0984)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7)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5)
10.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089)
1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7)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8)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8)
1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8)
1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3)
16.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7)
1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497)
1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3245)
1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0532)
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38)
21.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6)
22.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7)

23.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70)
24.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4)
2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5)
2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99)
2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4)
2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4)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2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부에서 유수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김의영 국방예산과장, 이철규 방위사업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소위 심사자료 1권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강훈식 의원과 성일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첫 번째, 주변지역 범위 확대 사항입니다.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km 이내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하여 평택시, 김천시 외에 아산시, 화성시 등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현행법과 시행령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인 ‘평택시 등’을 평택시와 김천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아산시 둔포면, 화성시 양감면 등의 경우에는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km 이내에 위치하여 주한미군기지에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미군시설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재산권 침해, 각종 규제에 의한 지역 발전 저해 등의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특별법의 제정 목적이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에 의해 추가되는 지역 대부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주변지역 확대 시 지역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 등으로 3년간 총 987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부 측 의견으로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는 피해 발생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안은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평택시 또한 예산상의 제약으로 현행법의 입법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산시 둔포면 지역은 평택시 팽성읍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미군기지 3km 범위 내 모든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헌법 제11조 평등권 가치 실현에도 부합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또한 화성시 일부 지역에도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3km 이내에 위치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 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지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 두 번째인 소음 대책, 환경오염 및 예방 대책 수립 사항입니다.

강훈식 의원이 제안한 동 조항은 소음 및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동 사항은 지난 2020년 11월 19일 법안소위에서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 하단입니다.

군용비행장 인근지역의 소음 대책을 위하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대책 수립 등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으로서는 이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유사한 조문이 규정되어 있으며 한시법인 동 법률에 해당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이후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국방부 입장은 부동의입니다.

먼저 주변지역의 범위를 평택시 등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문제는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지공여 및 주민 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된 특별법임을 고려해서 개정안은 입법배경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서 부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은 방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 및 환경오염 대책 수립·시행 신설과 관련해서는 동 내용이 현재 군소음보상법과 미군 공여구역법에 관련 조문이 규정되어 있어 부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충남의 두 의원님께서 이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물론 이 법이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지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법인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군기지가 이전함으로써 주변지역의 군공항과 관련된 소음피해나 여러 가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성 양감면 주변에 오산 미군기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주민들께서 피해가 엄청 많으시고, 또 여기 법안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이나 소음방지법과 관련된 법으로 인해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지원금도 적을뿐더러 이 제도 자체도 사실은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으로 지원이 다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국방이라는 부분들이 국가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하지만 국방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이나 행복권이나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부분들은 저는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국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적인 여건이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간과도 하고 이 부분들을 신경도 안 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충청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시기는 했지만 화성시 양감면의 일부 리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들이 포함돼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훈 위원** 그런데 평택시에 지원하는 규모하고, 이를테면 일인당이라든지 평당이라든지 또는 나머지 지역, 아산이나 화성에 지원하는 지원 액수하고 차이가 큼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훈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팀장 원승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팀장 원승구 대령입니다.

소음보상법 관련된 것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오산기지 같은 경우는 전투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피해보상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평택기지 같은 경우는 헬기와 그다음에 여객기 정도만 이착륙하고 있어서 보상되는 범위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택에는 원래 비행장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평택기지가 이전함으로써 추가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내가 물은 얘기에 대해서 전혀 답이 안 되는데……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900억 정도 이게 법안이 되면 국방부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사전에 검토할 때 그랬는데, 이 예산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되기 전에는 교부세에서 한 900억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이 법이 되면 가장 큰 차이가 국방비에서 한 900억 매년 나가는 걸로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누구 좀 명확히 얘기를 해 보세요. 앞에 기재부 예산국장 나왔나요? 기재부 혹시 누구 나왔어요, 기재부 국장?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예.

○**소위원장 김병주**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국장이 답변하기 뭐하면 전문가인 과장이……

○**설훈 위원**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양이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팀장 원승구** 제가 다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오늘 주한미군기지도장은 안 나왔나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팀장 원승구** 예, 안 나왔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왜 안 나왔지요?

지금 직책이 무엇이지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팀장 원승구** 기획팀장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차관님 나온다고 단장 안 나오고 밑의 팀장이 나온 모양이지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팀장 원승구** 국장이 나오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오케이, 알았어요.

얘기해 보세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팀장 원승구** 주민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22년까지 1조 100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06년부터 22년까지 제가 보니까 적게는 308억부터 한 1000억 정도 해서 지금 현재는 21년, 22년 정도 보면 한 180억에서 16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설훈 위원** 평택을 말하는 거예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팀장 원승구** 예, 평택.

○**소위원장 김병주** 평택에 1년에 180억씩 지원하고 있어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팀장 원승구** 예, 소공원, 마을회관 이런 이전사업 예산들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여기 이 법이 되면 아산시하고 화성시 일부 면 해당되잖아요. 여기는 얼마 지원이 되어야 돼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팀장 원승구** 그것도 예산처에서 산술적으로 일단 평균을 내봤을 경우에 98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

○**소위원장 김병주** 매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팀장 원승구**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매년은 아니고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이것 법이 되면 매년 지원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당장 해 줘야 되는 게 900억이고 매년 얼마 되고 이런 예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팀장 원승구** 매년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3개년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매년? 아니, 평택보다 그러면 더 많이 들어요? 평택은 지금 180억 든다 했잖아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팀장 원승구** 21년, 22년 정도가 180억 정도였고 제일 많이 들었던 09년, 08년 주민들이 이전했던 때에는 한 10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지금 말씀은 매년 한 300억씩 3년 들어가고 그다음은 또 운용해야 되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일추 한 150억 정도 들어갈 확률이 있네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팀장 원승구** 저희 주미사업단에서 운용하는 예산이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것은 국방비에서 들어가요, 어디서 들어가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팀장 원승구** 기본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족할 경우에 국방부 예산을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기재부 국장님 나와서 한번 예산에 대해서, 이게 법이 되면 어느 예산에서 들어가는지 그것을 명쾌히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느 정도인데 기재부가 반대하는 건지.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입니다.

지금 주변지역이 확대가 되는 경우에 예정처에서 검토한 자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3년간 총 987억 원을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 목적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직접적으로 지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전과 관련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법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이 특별법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여타 다른 또 관련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같이 또 포함되게 되면 이 법 체계 자체도 좀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지금 900억 정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이와 유사한 미군기지 는 저도 다른 데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없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은 3km 지역 이내라고 했는데 그 3km라는 범위는 임의적으로 법안에서 만들어지는 범위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이것을 더 늘려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택이나 김천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와 관련된 유사 주변지역들도 저희 입장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요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하고……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되면 미군기지 모든 데 적용이 돼서 어려워질 것이라 해서 의원실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평택 여기 외에는 다른 데는 없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모든 지역이 또 똑같은 요구가 된다면 천문학적으로 국방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신중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평택에만 국한…… 차관님 그것 데이터 없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소위원장 김병주 이런 것을 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지역이라든가 미군기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미 이와 유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대구라든가 일부 미군들 있는 기지가 이제는 많지가 않아서 저는 몇 군데 있느냐를 따져 봤는데, 그런 것 안 따져 봤어요?

의원실에서는 이 법안 때문에 지난번에 존경하는 성일중 위원님이 이것 법안소위에 안 올렸다고 파행되고 법안소위 위원장 그만두라고 그러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 난리를 쳐서 내가 이게 뭔지 집중적으로 따져 봤어요. 민원법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게 있는 것인지, 또 여야 의원이……

해 보니까 이것은 다른 기지는 해당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고 그래서 매년 300억씩 해서 900억이, 지금도 이 법이 안 되면 교부세에서 나갈 수가 있는데 법이 되면 국방비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마 운영비 비슷하게 소음이 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데도 되는데 그렇게 큰 예산은 들지 않는 걸로 현재는 확인했는데 기지 사업팀장 어떠세요, 그것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팀장 원승구 제가 이것을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 사업단에서 지원해야 되는 예산은 한 987억이지만 이 법에 영향을 받는, 예를 들어서 문체부라든가 여가부라든가 국토부는 다른 예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예산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 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평택하고 김천, 2개 기지에 대해서만 현재 적용을 받고 있지만 다른 기지에 대해서는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산시하고 화성시도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미군공여구역법에 근거해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종합발전계획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스포츠센터라든가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법인 평택지원법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군공여구역법에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위원장

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평택시특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된 규모가 80개 사업에 22조 원이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법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 규모가 165개 지자체가 해당되는데 455개 사업에 14.5조 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자체마다 평택시특별법으로 들어오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산시 같은 경우도 사실 실무적으로는 공여구역 지원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유인이 크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한 개정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런 욕구는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데이터를 주셔야 돼요.

○설훈 위원 본 위원이 물었던 내용은 전혀 답이 안 나오는데 이를테면 평택에 지원하는 경우하고 아산에 지원하는 경우하고 그 차이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잖아.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아산도 지원을 받고 있지요? 소음법이니 2개 법률에 의해서 아산하고 화성도 일부 주민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팀장 원승구 아산하고 화성은 평택지원법에 의해서……

○설훈 위원 평택지원법 말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팀장 원승구 다른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있지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팀장 원승구 예.

○설훈 위원 그 액수와 지금 평택시민들이 받고 있는 액수 차이를 얘기해 봐라 그랬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 어떤 이유 때문에 아산이나 화성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도 평택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지, 그 원인이 액수가 어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답변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팀장 원승구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 자료는 아닌데 충청남도에서 저희 토론회 때 제시했던 자료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충청도에서 평택시는 121억 원의 군소음보상금이 지급되고 있고 아산시에는 2.5억이 지급되고 있다고 얘기를 저희한테 와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시 자세하게 확인해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평택시에서 받고 있는 121억은 오산전투비행장에 있는 전투기에 의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고 평택에 있는 비행장은 51년도부터 비행장이 원래 있었습니다. 평택으로 기지가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피해가 아니고 평택 험프리 일대에 있는 주민으로만 따지면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편익시설사업은 평택시는 전체 1조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아산시는 받은 게 없다고 저희한테 주장을 했는데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원래 부지를 공여하거나 주민, 이전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이기 때문에 아산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소음은 군소음보상법으로, 환경 문제는 미군공여구역법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분야들도 미군공여구역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평택은 121억이 지원됐고 아산은 2억 5000이 지원됐으니까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인데, 그 외에 1조 1000억이 또 더 들어가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러면 아산 쪽에서 당연히 피해 조건으로 놓고 보면 비슷 비슷하니까 우리도 평택처럼 지원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인지상정이겠는데요. 안 그렇겠어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아산 쪽에 대한 배려가 다른 식으로든지 어떤 식이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음법까지 다 한다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은. 그렇잖아요? 평택은 100배 이상, 최소한 50배 이상 지원을 받고 있고 아산 쪽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하니까 아산 주민들도 쳐다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우리는 지원 하나도 안 해 주냐, 2억 5000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 아산 주민이나 화성시민들이 항의하고 우리도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위원장 김병주** 팀장이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이것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교부세나 여러 가지 법으로 아산시가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 상황에 맞게.

그런데 평택시가 이 법이 될 때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따라서 그 지역의 도로,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해 주게 돼 있었잖아요. 도로라든가 인프라 그런 예산까지 아까 몇조 원이 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그냥 기재부하고 저런 데서 반대한다 하면 안 되고 사실 기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특별한 희생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주변과 형평을 맞추는 측면은 저는 동의하고요.

두 번째,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이런 문제를 해소해 줘야 한미동맹 강화에도 기여가 돼요. 왜냐? 자꾸 이런 민원이 있는데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주한미군기지에 대해서 하면 그 자체가 한미동맹의 강화로 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한미군기지 주변에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법이 되게 되면 문제는 다른 법하고 형평성이 안 맞고 여러 법하고 충돌되는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앞으로 계속 국방비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아산이나 이런 데 해 주는 것 중에는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물론 똑같은지는 않지만 평택시에 준해서 대략적인 것은. 그런데 그것을 지방세로 할 수 있는데 국방비가 매년 몇백억씩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저는 오랜 군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용납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차관님, 사실 이것은 필요한 법이에요,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또 여야 같이 의원들이 다 제기한 법안이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리 강훈식 의원도 그렇고 제기한 법이니까 여기서 받아들일 게 뭔지,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일부라도 받아들여서 예산 항목에서 예를 들어서 ‘소음법은 소음법에 준해서 한다’ 이렇게 들어 가면 되잖아요, 아산이나 이런 데는. 그리고 이러이러한 예산은 지방교부세로 한다든가 이런 항목들을 넣어서,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여서, 전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송갑석 위원** 저도 조금 헛갈리는 게 있어서, 이게 법이 한 3개가 이야기가 되고 있었어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법 이것은 행안부하고 관련

된 법이고 그다음에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소음법이 있고.

그런데 아까 소음과 관련해서 오산비행장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서 평택은 121억……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팀장 원승구 그런데 그중에서 평택이지만 오산비행장이 115억이고 같은 평택에 있는 다른 주변지역은 6.67억이고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다 받고 있습니다, 평택기지에 대해서.

○송갑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음피해와 관련해서는 군소음보상법과 연관돼 있는 것이지 이것이 특별법, 공여지원법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기획팀장 원승구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소음법은 그렇게 해서 소음법대로 하는 것이니까 옆으로 치운다고 치고.

비슷한 질문들을 하신 것 같은데 아산시 입장에서는 현재 행안부 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돈의 규모하고 그다음에 특별법을 개정함으로 해서 받게 되는 돈의 규모 이게 대충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을까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여구역주변지역 특별지원법으로 아산시가 국비 지원받은 규모는 2023년까지 220억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여구역과 차별적으로 받지는 않은 것 같고 어느 정도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공여구역 특별지원법을 위해서 행안부하고 아산시가 개별 사업에 대해서 아마 건의 사업을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지난 여름에 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산시 요구가 아무래도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평택시 등의 특별법으로 오는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 트랙으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나,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의 그런 부분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종합개발계획 그 안에다 넣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평택

지원법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면 단위, 군 단위 경계는 행정적으로 그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피해는 같이 입고 있단 말이에요. 아산시 둔포면 지역도 평택하고 똑같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행정구역상 다르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은 피해 상관없다 이래 버리면 똑같이 피해 입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되느냐’ 당연히 그 소리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개정하자는 취지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판소리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 이치에는 저항할 수가 없어요. 고쳐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안 그래요?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피해는 똑같이 입고 있는데 평택 사람은 되고 아산 둔포면 사람은 안 되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李憲昇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예, 이현승 위원님 먼저 말씀 주세요.

○李憲昇 위원 차관님, 이 법 제목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목적이 뭐니까? 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됐습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병주 예.

○국방부차관 신범철 제가 방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일단 제가 마스크를 쓴 것은 제가 윤현주 국장을 만났는데 코로나 걸린 줄 몰랐습니다. 혹시 몰라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게 목적이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부지를 공유하고 주민들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특별법으로 보호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소음피해라든가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하고는 약간은 이 법 목적상 차이가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목적은 직접적으로 부지를 공유하거나 주민들이 타지로 이전하는 등 그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법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 외에 인근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주변지역은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소음 관련해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맞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래서 아산이나 인근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또 많은 통행량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 특별법에 3km 확대를 하려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인근지역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법에 의한 혜택이라 그럴까 지원이 훨씬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등등.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감으로는 차등을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100%를 해 주고 인근 몇 킬로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준하는 약간의 혜택, 한 50%라든지 반 정도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 대안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가지고 다음에 재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이헌승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먼저 강훈식 의원안에 대해서 제가 2020년도 11월 달에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핵심이 뭐냐 하면 평택이라고 분명하게 지명을 명시했는데 여기에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설훈 위원 평택 등, ‘등’으로 돼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어제—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평택시에서 찾아와서 ‘이 법에 넣는 건 안 맞는다, 우리 평택시는 부지를 제공했고 또 주민이 이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이기 때문에. 이분들 해 주는 걸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법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게 평택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방까지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사실 예산 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넣을 수 있는 항목이 뭔지—다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그것을 다음번에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산시 둔포면하고 화성시 양감면 이런 데서 불이익이 되지 않게 어떻게 보완할지 종합적으로, 지금 이것만 딱 보려고 하지 말고 국방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최소로 할 수 있게 그리고 불이익이 안 갈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무슨 혜택을 주는지까지 파악을 해서 여기서 답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가지고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자료 13쪽입니다.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다음 쪽, 14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인이 철도 등 수송시설 이용하는 경우에 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인데 지난 9월 22일 법안소위에서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대체토론이 있었고, 하단의 법안소위 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법안소위에서 군인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병사 외에 전체 군인으로 확대할 경우 철도 및 도시철도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어느 수송시설까지 지원할 것인지 기재부, 국토부, 서울교통공사 등과 논의할 필요가 있고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다음 법안소위에서 국방부와 유관 부처 협의를 거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부 측 의견 관련해서 국방부에서는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서 대상을 병사, 초급간부, 사관생도 등으로 한정하고 도시철도는 제외하고자 하나 타 부처 의견을 고려하여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정 부담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선행 필요 등의 이유로 대안을 마련하여 추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서는 윤후덕 의원안에 대해서 국방부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을 병사, 초급간부, 사관생도 등으로 한정하고 도시철도를 제외하고자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세종청사도 방문하고 국토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 철도요금 할인 법제화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역시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서 대상을 병사, 간부후보생, 초급간부로 제한하고 도시철도는 제외하되 철도 공익 서비스 비용의 대안 마련 및 비용추계 등을 고려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 검토가 저희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 비용 추계는 나와 있습니까, 할인을 했을 경우에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국방부탄약수송관리과장 송태진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장 송태진 대령입니다.

최초 의원님 발의할 때는 비용추계가 안 돼 있고 저희가 이후에 별도로 잠정적으로 비용추계를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으로 했을 때의 예산은 최대 707억, 최소 61억 이렇게 판단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국방부 의견으로 냈던,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초급간부들이나 사관후보생들까지 포함한 비용을 판단해 봤을 때는 약 86억에서 215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변동 폭이 심한 이유는 몇 회를 지원할 것인가 그다음에 할인율을 몇 퍼센트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여러 가지 폭이 넓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폭이 큰 상황입니다.

○설훈 위원 이게 연간 이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국방부탄약수송관리과장 송태진 연간입니다.

○설훈 위원 연간? 연간 60억.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데……

우리가 이 60억 때문에 군인들의 자부심에 약간의 흠결을 주게 되는 이런 결과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국방부탄약수송관리과장 송태진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각종 교통수단에 대해서 군인들이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항공도 있고 그다음에 선박도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군인입니다, 일반 간부, 병사 그다음에 군무원 포함.

그런데 철도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은 병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알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 군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훈 위원 그것은 또 왜 달라?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사나 군인 할인제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병 같은 경우는 군장병, 카투사,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이런 경우는 지금 한 10% 정도 할인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군인의 공무와 연관성이 큰 부분들 그것은 군 후급 할인제도라는 게 따로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전세열차랄지 건설열차, TMO 취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다양한 할인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들어간다고 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전혀 없던 게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글썄요, 이것은 법으로 하기보다는 시행령으로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차관님, 이것은 윤후덕 의원님이 저는 적절히 했다고 보는데 맨날 보면 같이 군복을 입은 장병들…… 장병 속에는 병사도 있고 간부도 있고 장군도 다 포함되잖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소위원장 김병주 전쟁 나면 목숨 바쳐서 싸우는 건 똑같은데 단지 직업군인이나 아니냐의

차이겠지요, 의무적으로 하느냐의. 그런데 굳이 거기에 우리가 얹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원칙은 여기 윤후덕 의원이 했듯이 ‘군무원 포함 군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단’ 하고 조건을 ‘예산을 고려해서 소위, 중위, 하사 이런 인원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에서조차도 여기에 구분을, 갈라치기 하는 건 안 맞지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전쟁 나면 목숨 바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또 이 혜택이라는 것이 개인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 아니지만 자부심은 되게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10%가 할인되든 20%가 할인되든 조금이라도 할인되면 그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지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저는 봉급명세서 통장에서 제일 자부심 느끼는 것이 국가유공자 수당, 지자체에서 3만 원 나오는 것, 나 그것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건 자랑 안 하는데 그것 볼 때마다 너무 흐뭇해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대원칙은 군인 이것을 정하는 걸로 한다, 단 예산을 고려해서…… 이쪽 국방부 수정 의견 있잖아요. 이런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거 규정을 두고 그런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것은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세부 내용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렇지요. 그것이 헌법정신 하고도 맞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우리 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여기 뒤에 계신 실무자를 포함해서…… 18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군인이 군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진삼 의원님께서 군번줄까지 확인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왜 군인이 군복을 입지 않느냐’ 이어서 ‘국회에 올 때 현역군인은 전부 군복을 입고 와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군복을 입지 않고 혜택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군인으로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혜택은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할인받고 하는 것도 저는 거꾸로 군복 입은 자에 한해서 해 줘야 된다, 군복 입지 않고 신분증만 갖고 휴가증만 가지고 ‘나 군인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병사들 봉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할인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면제라든가 더 과대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할인제도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상자 어디까지 포함됐는지 모르지만 먼젓번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관생도, ROTC 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군인의 초급간부에 준해서, 병사에 준해서 해 준다면 그렇게 대상은 확대하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떳떳한 신분의 모습을 보일 때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설훈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병주 예.

○설훈 위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군인도 사복을 입어야 할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차피 신분증을 가지고 내가 군인이라는 표시를 해야 될 터이니까 정복을 입었냐, 군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가지고 판정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야박하고 신분증이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사복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신분증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인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조항을 여기 국방부안 있잖아요, 이것을 넣어서 ‘예산 고려해서 이런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리고 시행을 점진 확대한다.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이나 그런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국방부안도 충족되면서……

군인들을 여기 법에서도 갈라치기 하면 안 되잖아요. 헌법 5조 2항에 국군의 사명, 국군 이렇게 나오잖아요. 병사의 사명, 장교의 사명, 간부의 사명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임무라든가 똑같은데 굳이 혜택에 들어가서 갈라치기를 할 필요는 없고 대원칙은 똑같이 하되 예산이 문제가 되니 예산은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화해서 여건이 되면 해 주는 그런 안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도 법이 없는데도 할인해 주잖아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게 국방부랑 코레일이 같이 아마 MOU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할인을 계속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PSO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적 성격의 서비스를 국가에 대해서 보상하는, 철도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 지금 공공운임 감면보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인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에게는 할인을 해 줍니다.

이게 국토부 소관인데요. 국토부랑 기재부랑 그다음에 국방부랑 논의했던 부분은 PSO 제도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국토부가 초기에 반대를 해 가지고 아직 결론을 못 내린 상태이고 저희 예산실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그런 할인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은 기존 할인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그다음에 한번 다시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뭐가 있냐면 법사위원회에 가서 계류된 법들이 있어요. 법사위에 올라가서 계류된 법들 대부분이 군인들 복지와 관련된 법인데 법사위에 가면 ‘경찰은, 소방공무원은 왜 똑같이 안 해 주느냐’ 해서 군인들 것을 통과 안 시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우리가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보내면 법사위에서 ‘경찰은 안 해 주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안 해 주냐’ 이런 가능성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법으로 안 만들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구태여 법을 과잉해서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 가서 걸려서 이게 지연되거나…… 이것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것이지, 다른 편한 길이 있는데. 이게 법사위 가면 또 걸린다니까, 형평성 때문에.

○국방부탄약수송관리과장 송태진 위원님, 발언

기회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예, 얘기해 보세요.

○국방부탄약수송관리과장 송태진 법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동의는 하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현재 법 없이도 지금 에스알이나 다음에 항공사들 저희가 군인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정하게 되면 코레일도 마찬가지로 에스알도 그냥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이게 법으로 되게 되면 이제 저희 어떤 예산이든, PSO 예산이든 국방비든 지불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오히려 국방비에도 낭비 요소들이 많고……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지요. 제복 입은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지 뭐 소리야? 법으로 보장하지 않고, 우리가 법치국가인데 문화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법으로 보장이 일단 되고 예산을 해야 되지요.

저는 사실 약간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중령 때 미 중부사에서 이라크전 났을 때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아빠가 군인이었던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지 몰랐다’고, ‘한국에서 몰랐는데 미국 가서 느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매번 조희나 이런 것 할 때 ‘아빠가 군인인 분 일어나세요’ 해 가지고 박수 쳐 주고 밥 먹을 때도 ‘제일 앞에 서라’ 그러고 모든 걸 우선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에 있을 때는 ‘아빠가 군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는데 미국 가서 생활하면서 학교 가서 ‘이렇게 아빠가 자랑스러운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왜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되면 좋은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제복 입은 군인들 그렇지 않잖아요, 군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법으로라도 대원칙이라도 해 놓고 예산이 다 안 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고 미국에 가서, 저도 갈 때 군인 신분증을 보여 주면 혜택을 주는 걸 봤습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달라요. 미국은 미국의 문화가 있고, 거기는 전부 다 지원 입대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징병제이고. 이게 지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법이 아니고도 되는 걸 갖다가 법에다

꼭 넣어야 되겠다, 이게 과잉 입법이에요, 속말로 해서. 아예 안 해도 되는 걸 왜 합니까? 국회의원이 법 많이 만드는 게 장땡입니까? 저는 법으로 가는 건 반대합니다. 그냥 국방부하고 관계부처, 관계 기관 그리고 그 회사들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걸로 충분하다면 그걸로 처리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국방부, 그러면 일단은 수정의견 이것은 동의한다 했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수정의견이라 함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위원장 김병주 여기 ‘소위·중위, 하사’ 나온 것 있잖아요. 이걸 동의한다고 했지요, 16쪽?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소위원장 김병주 이걸 문제없다 했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이것은 물론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는 그러면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소위원장 김병주 됐어요, 이제 국장님은 됐고.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한기호 위원 말씀하실 기회를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소위원장 김병주 충분히 들었잖아요.

○설훈 위원 한기호 위원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잉 입법은 우리가 안 하는 게 좋은데 동료 의원이 이 문제를 지금 구체적으로 진술을 않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했는지는 문자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나온 법안인데 그냥……

본 위원도 이걸 굳이 법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있는데 발의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그러고 판단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발의한 의원님 오셔서 가지고 얘기를 좀 하시라고 하고 그러고 판단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소위원장 김병주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말씀하고 한기호 위원님 말씀 저는 일리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음 법안은 할 확률이 적습니다. 물

리적으로 지금 21대가 5월 달에 끝나고 지금 우리 법안소위 한 200개 법안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보류되면 다시 올리기가……

○설훈 위원 그다음 22대에서 하면 돼요.

○한기호 위원 가능하면……

설훈 위원님, 우리가 통상 과거에 국회가 끝날 때 마지막 날, 마지막 전날 밤에 늦게까지도 법안 통과시키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기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4월 10일 선거 끝나고 5월 말까지만 해도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설훈 위원 더 가는 것은 22대에도 할 수 있어요.

○한기호 위원 예.

○설훈 위원 다시 법안 살려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시간에 쫓겨서 못 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걱정일 것 같고 어느 것이 합리적이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리 하시지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법안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은 제복 입은 군인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소한 대우에서부터, 사실 자긍심이 큰 데서도 나오지만 그런 데부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국방부는 노력해야 되고.

과장님이라고 했어요?

○국방부탄약수송관리과장 송태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과장님은 현재 대령이신가요?

○국방부탄약수송관리과장 송태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너무 업무적으로만 보지 말고 큰 틀에서 군복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지킬지 검토를 해 보세요, 너무 돈의 가치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국방부탄약수송관리과장 송태진 전체적인 복지 차원에서 같이……

○소위원장 김병주 돈의 가치로 보려고 하지 말고 군인의 신성한 임무 이런 측면에서 보려고 하고, 뒤에 있는 국방부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공무원, 과장님들도 자기 업무에서 너무 지엽적으로 ‘돈, 돈’ 하면서 보지 말고 큰 틀에서 우리 제복의 가치가 존중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도록, 법이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李憲昇 위원 넘어가기 전에 국방부에서 수정 의견 낸 것을 시행령에 녹일 수 있으면 시행령에 담아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자료 21쪽 이현승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주거보조비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군 숙소 또는 임대주택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현재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주택 시세 대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군무원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현재 군 숙소의 노후화·부족 현상하에서 예산 및 군 숙소 총량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군인의 주거지원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주거보조비 신설 취지에 동의하나 부양가족 유무, 지역별 시세 등을 고려한 지원기준, 지급액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후 재정 소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도 거칠 필요가 있어 군무원 주거지원은 격오지에 근무하

는 군무원에 한정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송옥주 의원안을 유지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송옥주 의원안은 지난 9월 22일 법안소위에서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 한정해서 군무원 주거지원을 하는 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주거지원은 시설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건비성 지원사업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군무원은 군인과 업무 성격, 근무조건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칙(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신규 제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서 6개월 정도가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군 숙소가 부족한 지역에 주거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주거보조비의 신설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군무원 주거지원의 경우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 한정해서 주거를 지원하는 송옥주 의원님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지난번에 송옥주 의원님 안 검토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그랬네요. 그때 지난번 소위에서 송옥주 의원님 안에 대해서 군무원 주거시설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 한정하는 걸로 해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분의 의견도 그걸로 수정을 해서 올라가면……

그게 국방위 전체회의 통과했나요? 안 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예, 아직……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3개의 대안으로 가면 어떨까요? 이걸 지난번에 많이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이것은 주거보조비 신설 부분이기 때문에 송옥주 의원안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보조비 신설. 그러면 주거를 지원하는 것은 송옥주 의원님 안과 일치하는 것이고 하나는 주거비 지원하는 안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李憲昇** 위원 군무원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격 오지 근무하는 군무원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송옥주 의원님 안을 저도 동의를 하고요.

주거보조비 신설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추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기재부, 어느 정도 재정 소요가 되겠습니까? 분석한 게 나왔어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예, 이것 약간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 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송옥주 의원님 안은 이미 소위를 통과했는데 그건 군무원 주거지원에 관한 부분이고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주거보조비하고 군무원에 대한 주거보조비 이게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뭐냐면 이건 법적 근거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법적 근거라는 건 대통령령으로도 할 수가 있고 법률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미 법적 근거는 있고, 다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처우개선을 해 주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수당으로 법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26년 만에 처음으로 2배로 올렸습니다. 물론 지금 수준이 높다는 건 아닙니다.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올렸는데 아마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는 ‘그 수준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 좀 더 올려 달라’ 이런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이지 법률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군이 법적 근거를 여기다가 담을 필요가 있느냐, 그와 연장선상에서 군무원 같은 경우도 법적 근거를 군이 여기다 담을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옥주 의원님 안이 이미 통과돼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좀 때늦은 감은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위 때 미처 말씀을 못드려서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같은 경우도 국방부 훈령으로

주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항상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관사나 이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도 상당히 크게 늘려 놔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늘려 가게 되면 군무원들 같은 경우도 많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콘셉트의 문제인데요.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더라도 군무원은 사실은 공무원에 가깝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도 공무원에 준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무원에 대한 지원을 군인하고 이렇게 똑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콘셉트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 법이 군인복지기본법입니다. 그래서 법 목적하고도 군무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적절치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부분은 정말, 군무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군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면 국방부 차원에서 군무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법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규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금방 군무원이 늘어난다고 그러셨어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예, 지금 군무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지금 막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원이 부족해서…… 국방부에서 한번 답을 해 보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래도 군무원 수는 저희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군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군무원으로 대체를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려면 더더욱 처우개선을 해줘야지 더 많이 지원을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그런데 얼마씩 지급하고 있지요, 기재부? 16만 원?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런데 그것을 배로 늘린다고 그러셨어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작년에 배로 늘렸습니다.

○李憲昇 위원 늘린 게 16만 원입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저희가 일시에 모든 수준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李憲昇 위원 숙소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됩니까? 숙소 한 실 지으려면 얼마나 더 됩니까, 평균?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 김의영 2억입니다.

○李憲昇 위원 하나 2억 짓는 것보다 주택수당을 조금 더 늘려 주는 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저희가 이것을 주택수당하고 숙소 관사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주택임차료에 대한 이자 지원 이렇게 다양하게 원하는 수요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수당 같은 경우는 실제 주택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불가피하게 군 관사나 이런 것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李憲昇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군 숙소라든지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곳, 이것도 아마 격오지 이런 데 포함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주택수당 지원은 저는 당연히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납니까? 군인 주거보조비 도입 방안 연구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주거보조비 취지에는 공감을 해서 지금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정 재정규모가 나오면 기재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李憲昇 위원 기재부에서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그 연구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주

거보조비 필요성이라든지 지급대상, 지역별 지급액 이것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전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서 상당히 늘려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거보조비 지원 근거가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주거보조비가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 설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택수당은 없어지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이 연구용역에 그런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충분히 상의하셔서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고 만약에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예산심의가 된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그 용역 결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기재부 국장님, 군인 주택수당이 언제 생긴 지 아세요? 처음 생길 때 얼마였는지 아세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83년도,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제가 대위 때 기억하는데 그때 7만 원이었어요, 30년 전에. 그때 대위로서 7만 원은 그래도 그때는 적정한 수준이었어요, 그 당시 30년 전. 그런데 이제 8만 원에서 작년에 16만 원으로 오른 겁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어요, 한 번도.

기재부에서 오신 국장, 과장님 잘 들으세요. 저는 4년 전에 전역을 해서 늘 느끼는 것이 우리 개인소득이 3만 불 시대를 가고 있잖아요. 첨단무기는 5만 불 국가 수준에 가 있어요, F35라든가 등등 이런 첨단무기들은. 그런데 우리 장병들, 병사 플러스 간부들의 의식주와 개인장구류 수준은 1만 불 국가 수준밖에 안 돼요, 실제. 제가 미국이나 유엔에도 근무하고 여러 나라 근무를 실질적으로 해 봤는데 1만 불 국가 수준밖에 안 돼요.

주택수당도 그 한 예예요. 30년 전에 막 생겨서 7만 원, 최초에는 3만 원 하다가 제가 대위 때 한 7만 원 정도 왔는데 그걸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으니 얼마나 간부들이 힘들겠어요.

그때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위 때도 우리 간부들의 봉급이 사회 봉급의 60% 수준이었어요. 아주 봉급 수준도 낮고. 김대중 대통령 때 공약을 90%까지 올리겠다고 해서 그때 90%까지 사회 수준으로 올려서 그나마 조금 좋아졌는데 나머지 복지가 그렇게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할 게 아니에요. 실제 몇 조를 투입하더라도 획기적으로 한번 향상시키지 않으면, 지금 중·소위들 점점 떠나가고 있잖아요. 사관학교 생도들도 퇴교율이 육사 같은 데는 작년에 오십몇 명이 퇴교했다고 그러고 ROTC도 지원율이 저조하고 군무원도 지금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3군단장 최근에 했는데 2사단, 12사단, 예전에는 군단급 밑에는 군무원이 별로, 사단급은 배치가 안 됐어요. 이제는 현역이 줄으니까 군무원들이 저 밑의 사단 연대까지 가는데 방이 없어, 방이. 군단사령부가 기린면이라는 면 소재지에 있고 대부분 면과 동에 있는데 방을 얻으려고 해도 방이 없습니다. 그 면에 무슨 방이 있어요. 그런데 군무원들한테 격오지에 군무원 주택 지원한다는데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너무 동떨어진…… 방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을 했지만 그 당시 이런 지침들이 법이 정비가 안 돼서 지휘관들이 범법행위를 할 수 있다고, 실제. 그래서 법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주고 그 밑의 하부 시행령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법이 정비가 안 돼서 제가 그때도 고민이 많았어요. 군무원들 방이 없어서 남는 아파트 줘야 되는데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그러면 법을 위배하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상급 부대에 건의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지만 왜 우리 군의 간부들을, 지휘관들, 고위급들을 범법자로 만드려고 그래요, 법이 정비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국장님하고 여기 다 국방 관련된 기재부 계시잖아요. 제발 진상체험 좀 하세요, 진상체험. 가서 한 이틀, 3일씩 자고 오고 육·해·공군, 해병대 다 가서 그 실정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만날 돈의 관점으로 국방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지요. 군 숙소 지원에 대한 것은 이미 송옥주 의원님 거기에 됐고, 수당 문제는 여러 가지 충돌이 되니까 이 법안 2개하고

송옥주 의원님 올라간 법안하고 대안으로 국방위 전체회의에…… 전체회의 통과 안 됐지요? 됐나요?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이 2개, 그러니까 김성원 의원하고 이현승 의원안은 계속 심사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이현승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李憲昇 위원 예, 그러시지요.

11월 용역 결과 보고 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병주 그렇게 하시지요.

오늘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법안들만 제일 앞에 와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자료 25쪽입니다.

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방부차관이 선정위원회에 참여할 경우에 선정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복수차관이 운용되고 있는 유사 입법례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30쪽입니다.

두 번째,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주체 등 변경 사항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주체와 지역기업 우대계약의 주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주체는 국방부장관과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에 따라서 동 지원계획의 하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연차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를 개정안과 같이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기업 우대계약의 주체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주체인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12조제2항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지원 시행계획 등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제출절차를 삭제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동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조항을 존치하고 제12조제1항과 용어를 일치시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승인권자 변경 사항입니다.

검토의견 하단입니다.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할 수 있는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관 사업도 포함될 수 있음에 따라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관 사업으로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개정안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양 기관의 장을 병기하는 부분입니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병기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4조(인가·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행정기본법에서 인허가 등 의제를 위한 사전협의기간을 규정하고 협의간주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행정기본법 규정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네 번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차장급 공무원과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처·청 단위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과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처별 직급 체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와 같이 ‘차장급 공무원’이라는 법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부칙 신설입니다.

시행령의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국방부 요청을 고려하여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신범철 원활한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군 공항 이전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일부 보완 사항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송옥주 위원 대구의 군 공항을 이전하는, 임병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저희 화성과 수원 지역에도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현안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이 우려스럽다는 생각이구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군 공항 이전법과 관련된 목적과 취지는 이렇습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은 중전부지의 자치단체라든지 중전부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처음에 만들 때 이것과 관련된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결정사항들을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전부 다 중전부지의 단체장이라고 개정을 하게 되면 이전부지에 대한 복리라든지 지원체계나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법의 취지에 아주 크게 위반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의 조항 중에 책임 권한을 넘길 수 있는 12조·13조·14조·18조 관계 조항의 개정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12·13·14가 뭐였지요?

○송옥주 위원 중전부지 자치단체장으로 권한을 넘기는 부분이거든요, 12·13·14·18조.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예,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길성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길성입니다.

송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양여재산 가치 범위 내에서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주도하여 국방부장관이랑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현재 법률에 돼 있고 시행주체도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12·13·14·18조에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또 시행승인을 하도록 돼 있고 인허가 등을 할 때 관계기관 협의 주체가 되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면 그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갑자기 이 사항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앙행정기관장에 승인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관계 지자체장한테 승인권한이 있는 사항이,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그중의 아주 일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승인권한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 취지는 법률 제정된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맞춰 주자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은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을 바꿔 가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지금 12·13·14조항도 문제없다는 거예요?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길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중앙행정기관장으로 이렇게 바뀌도?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길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왜 그렇지요?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길성 지금 현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돼 있고요, 그것을 관계 지자체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병기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여기는 병기가 아닌데? 14조 같은 경우 2항에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이렇게 돼 있는 데요?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길성 그게 지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앞쪽의 13조에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오케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송 위원님, 이 우려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제한되게 이 항을 2개 병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송옥주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종전부지 단체장의 자격이 다른데 그것을 ‘또는’으로 병기를 해서 개정하면 어디서 책임을 지나요,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길성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이 지금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범위가 어디까지더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주변지역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절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구 군 공항 이전 관련해서 군위, 의성 주민들과 지금 지원사업 내용들을 협의하는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등 주민들 숙원사업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 또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관계 법령에서 그런 사업들의 승인주체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주로 대부분은 관계 지자체장에 승인권한이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지자체장이 원래 관계 법령에서 승인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 주는 게 맞고요.

지금 현행 법률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그냥 그대로 두면 원래 승인권한도 없었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가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 와라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기해 주면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 실제 승인주체에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될 수도 있고 관계 지자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옥주 위원** 글썽요, 저희가 법을 만드는 목적이 큰 원칙과 취지를 살리는 법도 있는 것이고 현실적인 걸 감안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 군인이나 군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들은 현실은 무시하고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장하다가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주장하는 부분들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들이 종전부지 자치단체장이 활동을 안 해서 이게 지연이 좀 되고 있는 건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심이 없어서 진행이 더디고 있는 건지에 대한 배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책임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종전부지 자치단체장으로 이전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얘기하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것은 종전부지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법 취지와 목적이 간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실히 큼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승인이거나 그런 건 행정절차일 뿐이고 그걸 꼭 종전부지 자치단체장만 승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종 권한과 관련된 부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임 권한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더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단장님, 기존 법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지금?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길성** 제가 조금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군 위, 의성 지역에서 논의 중인 지원사업 중에 어떤 면 지역에 생활편의시설 하나를 그 예산으로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행 법률에 따르면 그 승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예를 들어서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 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해당 관계 법령에 따르면 그것은 관계 지자체장,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한테, 예를 들어서 군위군수라든지 경북도지사한테 원래 승인권한이 있는 사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그것을 중앙행

정기관장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 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이것을 왜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또 만약에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알겠습니다. 이것은 송옥주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 조금 더 숙려 과정을 거쳐서 세부적으로 송옥주 위원님한테도 그런 사례를 다시 보고를 드리고 저한테도 그 세부적인 것을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도 해 주면 어떨까요?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지금 정부가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지역에서 지역구 관리를 하다 보면 군사시설과 관련돼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책임과 권한이 군수한테 있다 그러면 군수한테 오케이 사인받으면 되는 것이지 도지사나 국토부장관한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허가권자, 권한을 가진 자, 최종 결재권자 여기서 종결되면 될 것을 중앙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오히려 가장 합리적으로 행정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을 왜 반대를 해요, 오히려 일을 더 잘하고 쉽게 하고 편하게 하고 빨리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김병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소위에서 지금까지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숙려를 했으니까 군 공항 이전·지원에 대해 했던 이것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다음번에 할 때 우선적으로 법안소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체되니까 전문위원님, 다음번에는 꼭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도록 이 법안은……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렇게 복잡한 법안이 아니니까 법안소위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번만 더 정리를 해 볼까요?

○**소위원장 김병주** 예.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총 5건의 사항이고요, 지금 논의하시는 것은 1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칙에 있는 것이 다섯 번째고 그다음에 차장 등에 대한 건 입법례로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병기하는 것, 기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돼 있는 것을 지자체장으로 병기하는 부분이 2건이고요. 지금 논의하시는 송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주체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종전부지라는 이 부분과 관련된 논의이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하실 때 5건 중에 4건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테니까요. 송옥주 위원님은 사실 공항 이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테니까 차관님은 국장 시켜서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알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잠깐만요. 송옥주 위원님도 2항 말고는 별다른 의견 없지 않습니까, 같이 병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2항만 지금……

○송옥주 위원 병기하는 것도 문제 제기를 해서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좀 더 보고도 해 주시고 저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이것은 다음번에 우선적으로 올려서 검토할 테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으면 논의 시간도 줄어들고 저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 계속 이렇게 논의하기에는, 이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하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자 가산 지급과 관련된 부분으로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할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현행법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우 근거 규정이 없는 관계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동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 귀책사유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여 확대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사 입법례와 같이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와 국방부는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면서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전 급여 소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소급 적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법원의 판결 등 사법적 절차에 따라 국가의 귀책사유가 인정된 경우 소급효가 적절한 측면이 있고, 5년 경과 시 소급효를 중단하여 법적 안정성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문의 수정의견과 같이 국가의 귀책사유를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신범철 수정 동의합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국가의 귀책사유의 범위가 불분명해서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보다 분명하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6조 5항과 부칙 제2조 특례 규정에서 ‘국가의 귀책사유’를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송갑석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급여를 소급 지급해 주는데 예를 들자면 국가의 귀책사유가 아닌 케이스도 있나요?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도 법원의 판결로 제한을 하는 것이, 다른 유사 입법례에서도 그런 경우가 예측치 못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 과오라든가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통상 급여를 소급하여 다시 지급할 때는 대부분 재판을 거쳐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재판 절차도 없이 인정이 돼서…… 국방부에 한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건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저희가 재정관리단에서 실제 지급을 할 때 워낙 지급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또 해마다 연금 지급기준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의 변동 때문에 과오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저희가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자 지급 없이 본인에게 통지를 하고 사전 안내하고 환수를 다시, 과오납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국가가 환수를 받을 때는 이자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과오납 지급을 했을 때 단순 착오의 경우에는 이자 없이 지금 지급을 다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건은 굉장히 큰 안건이고 저희가 이자를 산정해 보면 개략, 한 분의 경우에는 거의 9억 정도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자가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자분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수정안대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자면 금액이 크지 않은, 이자가 조금 붙는 건데 이게 좀 불분명하게 처리되면 얼마 안 되는 이자를 받으려고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하고 혹시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보건복지관입니다.

이자란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순 착오에 관한 것들은 이자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나 국세기본법에서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공무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군인만 해당되는 건지, 일반 공무원들도 해당……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 조회해 봤는데 이렇게 형벌 등에 의해서 저희처럼 장기간에 의해서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입법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똑같은 경우에 공무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공무원은 이런 규정은 없는데 인사혁신처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보통은 국가가 과오납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해라라는 것이 판례로 계속 누적되어 있고요. 인사혁신처 관련해서 공무원연금법에는 이자 가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두 번째, 군에서 급여나 이런 것을 지급해 주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 말고 다른 경우도 자연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판 중이거나 뭐 하고 할 때 봉급의 얼마만 준다 이런 게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줄 때 그게 무혐의가 되든가 무죄가 되든가 해서 지급해 줄 때 그때는 이자 주냐?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보지 말고 다른 경우도 군에서 지급을 안 했던 걸 나중에 지급해 주면, 한 달 늦게 주든가 두 달 늦게 주든가 하면 그건 이자를 주냐?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보면 재판의 경우에서 아까 말씀하신 재판에 의해서 어떤 신분이 제약이 돼서 연금이 지급이 안 되다가 그게 다시 재처분이 나서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줄 수 있도록 법에 이미 있습니다. 연금법 제38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캐나다에서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한국에 군에 입대하겠다고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인으로 군에 자원입대해 가지고 와서 휴가를 가게 돼 있는데 국방부 돈이 모자라서 돈을 못 줬어. 그러고서 자기 돈으로 휴가를 갔다 왔어요. 왔는데 전역을 했어. 전역을 하고 나서 ‘내가 그때 휴가비 못 받은 것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휴가 때 줘야 될 돈을 못 주고 그게 6개월 후에 준 거야, 전역 후에. 그러면 그때 이자를 주냐? 제가 다양한 경우에 이자를 국방부나 여기서 줘야 될 돈의 이자를 주느냐고 묻는 거예요. 다 줘야지, 그 논리로 하면.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자 지급에 관한 것들은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이자를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유사한 윤필용 사건이라고 큰 사건이 있었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자를 꼭 받아야 되겠는데 못 받았다는 경우에는

다 재판을 걸어서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경우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휴가비라든가 급여 지연에 관한 데에서 이자에 대한 것들은 저희는 규정이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기재부 국장님,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불해야 될 돈이 공사 대금이다. 그런데 공사 대금이 다툼이 있어 가지고 지급을 못 하다가 나중에 해결이 돼서 지급할 경우 쥐야 될 시기가 늦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때도 이자 주나, 안 주나?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정확히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지연이자 개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그런 경우가 다른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지만 이자 지급이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지금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번 사항을 해야 되는데 점심식사 전에, 지금 병무청이 대전에서 와서 있는데 병무청 관련 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13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승 대표발의한 것 하나 있지요? 병무청은 이 1건이지요, 13항과 관련된 것? 11, 12, 13 묶여 있는데…… 그래서 병무청 관련된 걸 하면 병무청이 좀 일찍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순서를 바꾸시지요, 이것만 하고 식사하시는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오늘 목표가 13까지는 오전에 갈 줄 알았는데 못 가서…… 11, 12, 13에 대한 것 다 이현승 의원님 법안이네. 이것 하면 오후에 안 나오시는 것 아니지요? 나온다는 조건이야.

○李憲昇 위원 계속해야지.

○소위원장 김병주 계속 나오셔야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

정 제13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자료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이전에 54쪽에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역군인에 대해 매년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현승 의원안은 2건의 법률안 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대표발의를 하였습니다.

55쪽에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를 매년 검사하도록 군인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최근 현역군인들의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병의 자유권 제한, 행정의 재량 부여 필요성, 검사의 신뢰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국방부에서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방부 수정의견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군장병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보다는 병영 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보다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입니다.

장병의 자유권 제한 측면 및 행정의 재량 부여 필요성을 감안하여 ‘매년 검사하여야 한다’를 ‘검사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제2항은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사의 신뢰성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수정의견으로 마약류 검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세부적·기술적인 사항이므로 검사 방법의 발전 등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

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어서 병무청 소관에 관련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이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영판정검사 및 입영신체검사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군 내 마약범죄 현황을 보시면 군사경찰 입건 기준으로 20년 9건이던 것이 22년 30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4쪽 중간에 보시면 병역법 제20조에 의하여 선발하고 있는 모집병의 경우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14조의3제1항의 입영판정검사 및 제7항의 입영신체검사를 거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모집병을 포함한 모든 현역병에 대한 신체검사 시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의무화하고자 한다면 위 모집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20조제1항 역시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방부 및 병무청도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수정 동의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문구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문구 수정과 관련해서는 병의 자유권 제한 측면 및 행정의 재량 부여 필요성을 감안해서 ‘매년 검사하여야 한다’를 ‘검사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신뢰성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함을 규정했다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약류 검사의 구체적인 방

법과 절차 등은 세부적·기술적인 사항이므로 검사방법의 발전 등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병무청 혹시 의견 있어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병무청 차장입니다.

병무청에서도 우리 전문위원 수정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를 위해서 입영 전에 입영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 시에 마약류 투약, 여러 가지 관련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의무화하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모집병을 포함해서 모든 현역병에 대해 의무화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李憲昇 위원 저도 대체적으로 검토보고서에 동의를 하고요. ‘검사하여야 한다’를 ‘검사할 수 있다’로 이렇게 임의규정을 두셨는데 그 이유가 장병의 자유권 제한 측면 및 행정 재량 부여의 필요성, 제가 행정 재량 부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자유권 제한 측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미군 규정을 잠깐 보니까 입대나 임용 시에 마약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장병들 입영신체검사 시에 서명을 받으면 이런 조항들이 조금 해소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위원님 말씀도 공감할 수 있는데 이게 이쪽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검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헌법소원이라든가 다른 문제 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사할 수 있다’로 수정해 놓으면 저희가 검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후자 쪽, 그러니까 행정의 재량 부여 필요성이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관이……

○李憲昇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고요. ‘검사할 수 있다’로 수정해도 좋은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한 대로 입영신체검사 시에 이런 마약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는 걸 하나 좀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그런 부분도 저희도

공감합니다.

○**李憲昇 위원** 이걸 하려면 어디 법에 규정을 합니까? 시행령에……

○**병무청차장 김종호** 원래는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최상이고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필요하고 다만 그런 적극적인 동의 부분은 또 저희가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위원** 이 법이 통과되면 서약서에 서명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여기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그건 없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것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인권침해 부분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번 병역법 개정의 근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병역법 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입영판정검사의 동의 절차는 법률만 개정이 된다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李憲昇 위원** 이 법률만 개정된다면 꼭 이 조항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李憲昇 위원** 우리 다른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임용할 때는 이 마약검사하고 있지요? 모르십니까?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보건복지관이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 경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의 신분인데 본인이 그런 직종에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민간병원에서 마약검사를 하고 음성 확인증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의무로 되어 있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예.

○**李憲昇 위원** 하여튼 병무청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입영신체검사 시에 이에 준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잘 알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 마약검사는 모발로 하는 것이 있고 혈액으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는 주로 혈액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보건복지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약검사 방법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모발 검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침해 우려가 가장 적은 것이 소변 검사고요, 소변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키트로 조사를 한 다음에 빠르면 1시간 이내에도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모발 검사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영장이 있어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이 되고 있어서요, 이번에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세부 관련해서 국방부 내에서 규정을 만들 텐데 저희가 생각하는 안은 일단 이 키트로 간이검사를 하고 간이검사 때 문제가 나오면 정밀검사를 시행을 하고 정밀검사 시에도 양성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확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는 군 간부에 대해서 각 군의 규정을 먼저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초기 간이검사는 우리 군 병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정밀검사하고 확진검사는 아직 우리 군 내의 전문수사 능력이 약간 미진해서 정밀검사는 민간에 위탁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진검사는 국과수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본부에서 조사관의 역량이라든가 장비를 연말까지 구축을 해서 내년부터는 군 내에서 정밀검사, 확진검사까지 시행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지금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는 문제니까 또 예산도 추가될 수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 그런 것도 좀 반영이, 이 법이 올해 통과가 되는 걸 가정해서 예산도 좀 추가하는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처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참고로 지난 9월 22일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안으로

처리한 바 있는데 오늘 처리하는 동일 제명의 법률안과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난 소위원회 심사결과와 오늘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지난 9월 22일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바 있는데 오늘 처리하는 동일 제명의 법률안과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난 소위원회 심사결과와 오늘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14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김용판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47쪽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사관 등의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현행법 규정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최근 헌법재판소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설정하여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현행법의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김용판 의원안은 10년, 문진석 의원안은 15년이 경과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현행법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군인 임용 결격사유 적용 기간을 명시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군인의 임용 최고 연령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공무담임권 보장을 위해서 10년으로의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설훈 위원 본 위원도 국방부 의견하고 비슷하는데 어차피 그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니까 이 조항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10년이면 준사관만 하더라도 나이가 꽤 찬 상태이기 때문에 10년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성희롱 같은 경우에 10년 정도면 충분히 징계 효과는 있었다 생각하고 10년 정도로 하는 게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15년 하면 아마 근본적으로 군에 못 들어올 겁니다, 입대 일자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자료 49쪽입니다.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교내 훈련을 받는 학군사관후보생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이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학군사관후보생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학군사관후보생이 입영훈련기간뿐 아니라 교내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도 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의 일부라는 점에서 입영훈련과 동일하게 보수를 지급하여 학군사관후보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으로는, 학군사관후보생의 교내 군사교육도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임무 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군장교 지원을 지속 하락에 따른 획득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을 제고를 위해 교내 군사교육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쪽, 정부부처 의견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사관생도 등과 훈련장도, 기간, 급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고, 인사혁신처에서는 현재 군형법에 따라 입영기간에 한해 복무기간으로 간주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장학금, 장려금 등의 대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보수 지급은 수익적 행위이므로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보수 지급도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학군사관후보생의 교내 군사교육도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임무 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군장교 지원을 지속 하락에 따른 획득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을 제고를 위해 교내 군사교육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토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 밑의 ‘개정안 시행 시’ 이걸 제기하겠다는 겁니까? 그 밑의 설명, 개정안 시행 시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24년도 ‘월 6만 2500원’, ‘4학년은 월 6만 8700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이게 조금 복잡해서 보건복지관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보건복지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관련 법률은 작년 9월에도 한 번 국방위에서 논의된 적이 있는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학군사관생도의 경우 입영 중인 경우에는 3학년의 경우에 병장 월급을 지원하고 있고요, 4학

년 때는 입영훈련기간에 대해서 병장 월급에 10%를 가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입영훈련기간이 아니라 교내 군사교육기간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평균 한 2시간 정도, 각 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2시간이라고 저희가 산출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비례해서 했을 때는 3학년의 경우에 내년 올라가는 병장 월급의 5%를 계산하면 6만 2500원으로 산정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 지금까지 이게 지급이 안 됐더라는 게 참 무슨 생각에서 안 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거기에 따르는 보수가 지급돼야 되는 게 상식인데 그동안에 안 줬더라는 데 대해서는 좀 놀라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해야 되는 처지니까 액수를 어떻게 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정하면 될 것 같고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당연히 개정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시행령으로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한마디 첨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잠깐만요, 다른 의견 듣고요.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습니까?

○송옥주 위원 저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채익 위원 그런데 제가 법안 심사하면서 계속 갈등을 느끼는 것은, 학군사관후보생이 지금 지원율이 굉장히 줄고 있지않아요. 그래서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재정당국의 입장이 제가 제일 걸려요. 계속 우리가 심사하면서 위원들 입장은 자꾸 해 주자는 쪽으로 가는데,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다 좋다이거야. 그런데 재정당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보면 ‘학군사관후보생의 교내 군사교육은 대학생들과 병행되므로 입영훈련과 훈련의 강도 및 관리·감독 등에서 그 성격이 상이한바 해당 기간 보수 지급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상임위가 계속 이렇게 해 놓고 법사위에 가서 또 잡

히고 했을 때 국방위 법안소위의 심의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당국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병주 예.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일단 먼저 지금 학군사관후보생들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방부하고 재원상의, 재정상의 대안 마련을 위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전향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을 갖기보다는 일단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렇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수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교육을 지금 2시간 받고 있거든요. 2시간 받고 있는데 이걸 보수로 봤을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생활 때도 군인의 지위를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처에서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그런 법체계적인 문제하고 약간 연관이 됐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든다면 만약에 군인의 지위라면 뭔가 범법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군형법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당초 의도한 바와 상당히 다르게 법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변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하고 좀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전향적인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수를 인정한다고 그러면 2시간을 받기 때문에 해 봐야 한 6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안은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그 이상의 대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기재부가 전향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신뢰를 잘 못 해요.

○설훈 위원 기재부가 갖고 있는 기본안은, 이를테면 지금 사병들 경우에 병장은 200만 원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가요? 병장 월급이 얼마……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지금 사관후보생들에 대해서는……

○설훈 위원 아니아니, 병장. 병장 월급 200만 원 하고 있는 그 정책은 나는 기본적으로 잘 생각했다고 봐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예, 맞습니다.

○설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위·중위 이런 분들하고 격차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위·중위 부분도 올려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국방비에서 들어가는 비용, 이걸 기재부에서는 무조건 줄이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방비가 지금 육십몇 조입니까, 올해 예산액? 63조던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57조입니다.

○설훈 위원 57조. 60조 가까이 될 텐데 60조 되는 중에서 무기체계도 획득해야 되고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에요, 사람. 군인들이라고. 군인들이 무기도 다루고 군인들의 생각이 발라야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하기 때문에 군인들을 어떻게 좋은 군인으로 만들어 낼 것이냐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군인에 대한 예우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발상이 그렇게 돼야 한다 생각해요.

무기획득은 그다음이에요. 좋은 군인이 나와야……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해요. 그걸 이용하는, 운용하는 군인이 좋은 사람이 나와야지. 그래서 발상은 어떻게 하면 좋은 군인을 만들어 낼 것인가 그걸 첫째로 삼고 그다음 무기획득, 그다음 기타 등등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학군사관후보생들한테 부대 입영하면 월급을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개념을 연장하면 학교 있을 때도 교육시간에 교육비를 주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걸 뭐 복잡하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안 줬다라는 게 이상한 것이고 지금 주자는 건데 주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주겠다 이런 취지니까, 6만

2000원, 6만 8000원 이래 가지고는 교육받는 학생들이 ‘이것 뭐 돈이라고 주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주려면 제대로 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다니까 좋은 입장이고.

더군다나 지금 군 자원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퇴교하는 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다 여기에 연관돼 있어요. 물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생각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물질적 상황에 대한 불안이게 깔려 있기 때문에 국가가 여기에 대한 보장을 해 줘야 돼요. 그걸 해야 든든한 국방이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그냥 하라 그러면, 이것은 의무감만 가지고 하라 안 통해요, 이제는.

그걸 감안하셔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차관님, 하나 물어볼게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소위원장 김병주 지금 시행하는 것이 여름 하계훈련 때는 병장 월급 두 달치를 주잖아요. 그 다음에 하계훈련이 아닐 때, 일반 대학생할 때는 군사학을 주 2시간 받기 때문에 2시간에 대한 수당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나가고 있지요?

맞나요, 국장님?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입영훈련하는 경우에는 지금 3학년의 경우에는 1년 차에 2개월을 받고요, 8주를 받고요. 4학년 때 1개월 해서, 4주 해서 총 12주를 받습니다. 그 기간에는 병장 월급에 상응하는 월급을 다 지급하고 있고요. 이번의 이 법안의 취지는 그 입영훈련이 아니라 평소에 학교생활을 병행하면서 교내 군사교육을 저희가 일주일에 평균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소위원장 김병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그걸 보수 개념에서 지급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렇지요? 그러니까 평시에는 지급 안 하고……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예, 안 하고.

○소위원장 김병주 하계 군사훈련 집체교육할 때만 병장 봉급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예. 그런데 추가로

이런 봉급 말고 저희가 부교재비라고 해서 월 6만 8000원씩 12개월을 다 연중 지급하고 있고 역량강화비라고 해서 저희가 실비 보상 측면에서 8만 원씩 8개월을 또 별도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게 지금 저희가 보수로서 명목으로는 지급을 못 하니까 부교재비 또는 역량강화비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지급을 안 하고 그냥 공으로 이렇게 군사교육을 받거나 그러고 있다 이런 약간 오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지, 교재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군에서 교재를 돈 받고 주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사관학교라든가 신병교육대 등 교재는 다 공짜로 주는 것이고, 교재비 실제 사야 돼요.

그다음에 역량강화비 그것 몇 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사실 군사학 2시간 한다고 하지만 2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1시간 이상 해요. 사관 ROTC 후보생들 매일 아침에 모여서 체력단련 1시간씩 하는 학교가 대다수예요, 실제. 그렇게 체력단련도 하고 또 수시로 집합해 갖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군사학 하는 시간만 2시간이지. 실제 우리 집이 과기대 앞인데 과기대 바로 앞 건물이 ROTC 건물이에요. 제가 매일 아침에 산책 가 보면 이 친구들 매일 아침에 모여서 1시간씩 훈련이랑 마찬가지로, 물론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 왔어요, 사실은 어느 학교나.

그리고 또 수시로 집합해서 교육받고 정신교육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보수의 개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ROTC 같은 경우는 사관학교에 준해서, 훈련받을 때는 집체교육하는 기간은 사관학교에 준하는 것이고 평시는 사관학교 정도는 안 되지만 한 반 정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 정신적인 압박은 사관학교의 한 반 정도는 받는다고 봐요. 그 친구들이 매일 아침 훈련하고 갑자기 소집하면 식사하다가도 불러 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 생도들 3학년이면 3학년, 4학년이면 4학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실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피복비라든가 교재비라든가 이런 건 다 무료로 제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ROTC에 대해서 비율이 조금 높았어요. 경쟁률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처우개선을 안 해도 오는 인원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강요만 할 게 아니에요. 전향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전향적인데 지금 기재부의 의견은 전향적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줄 것 다 뺐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장님, 약간 비교를 해드리면요. 지금 현재 사관학교 3, 4학년이 받는 비용이 한 3588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학군사관후보생들이 받는 금액이 1200만 원에 단기복무장려금을 포함하면 1878만 원인데 현 법안이 적용되면 2018만 원으로 한 140만 원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요. 성일종 의원님께서 새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연중 봉급을 상병과 병장 수준으로 지급한다면 3300만 원 수준으로 해서 사관학교와 유사하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재부 측에서는 재정소요를 조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접근을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가 봤을 때, 보수를 지급한다 이것에 아까 법제처는 문제없다고 그랬잖아요, 법제처 의견은.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추가적으로 보건복지관이 법제처에서 보내 온 의견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의견은 저희가 지금 병역법과 군인사법에 간부 학군사관생도들도 현역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지급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다만 계약적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아까 재영훈련기간인 경우에는 입영 중이라고 보기 때문에 군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입영하지 않는 기간에도 학군사관후보생이 군인인지에 대한 것과 또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정말 사관생도와 똑같이, 재영 중인 사관생도와 똑같은 월급을 법령상 보수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인 논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피하고자 하려면 이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장학금이라든가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쪽의 지급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더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보수로 하는 것은 연중은 안 맞다 그것 아니에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문구를 좀 바꾸어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설훈 위원 그러면 학사장교 ROTC에 대한 규정을 새로 해야지. 수업 중에도, 군사학을 받는 기간 중에도 군인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규정을 바꿔야지.

○소위원장 김병주 아마 그렇게 하면 또 무리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으로 하게 되면 군형법을 받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사고를 친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교통사고가 나도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설훈 위원 그 시간만, 군사학을 받는 시간만 군인으로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그래서 지금은 군형법에도 학군사관생도 같은 경우에는 재영훈련 중인 기간에만 군형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고 재영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이 통과가 된다면 연중 보수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월 6만 2000원이 됐든 6만 5000원이 됐든 연중 군형법을 적용받아야 된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법무관리관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사관생도들은 군인 신분인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입니다.

예, 군형법상 사관생도는 군인 신분이고요.

○소위원장 김병주 군인이고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ROTC 후보생들은 군인 신분은 아니죠?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러니까 입영 중인 경우에만 군인,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체력 단련한다 그때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때는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고, 일반에서도 군사학 2시간 받을 때는 군인 신분인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평시는 아니고 학기가 시작됐을 때, 여름방학 이럴 때 하계 집체교육받을 때만 군인 신분을 받는다?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법상에 ‘재영 중인 후보생’으로 하는 것은 균형법상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휘권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영내 활동을 하는 군인에 대해서 특별히 균형법에 범죄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사회생활을 하는 후보생한테까지 균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입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여기서 보수를 지급한다 하면 군인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문구를 좀 바꾸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문항 있잖아요. 물론 얼마나 줄지는 국방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조항들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는 ROTC들 진짜 소집도 안 되고 어려워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강요만 많이 했어요, 사실은 ROTC에 대해서는.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장님, 역량강화비 같은 것을 증액하게 될 경우에는 특별히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군인보수법상에 개정 조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보수 개념과 군인의 개념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후보생에 대한 지원을 하기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다른 법률이나 아니면 다른 제도로써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학군후보생에 대해서 사관학교에 준해서, 병영이나 교육을 받을 때는 준해서 보수나 이런 체계를 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병역법 제57조에 보면 학생군사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보수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의해서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에, 저희가 그 규정에 따라서 역량강화비를 월 8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당국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런 병역법 57조와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이 있기 때문에 이 역량강화비의 금액과 지급 시기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당국하고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도 예산 항

목만 조정하면 적정 수준의 보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병주** 한번 말씀……

○**이채익 위원** 입법해서 여러 가지 상충되니까 저는 이 부분은 입법으로 완성시키지 말고, 방금 국방부차관이나 기재부도 충분히 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설훈 위원**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그게 교육시간에도 군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것은 조금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학생들이 과연 군사학을 받는 기간에 군인 신분으로 하겠다 했을 때 그걸 받을 것인가, 반대가 아마 더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게 좋겠고, 대신에 실질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국방부에서 생각을 한다면 재정당국하고 상의해서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이견 다음에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소위원장 김병주** 기재부에서 획기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획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역량강화비 얼마라고 했지요, 지금 받는 게?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지금은 8개월에 8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8개월에?

○**국방부보건복지관 김은성** 8개월에 월 8만 원씩 해서 2년 동안 16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월 8만 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획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8만 원을 80만 원 정도 올리는 것을 획기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기재부는 획기적이라는 단어가 몇 배 정도 올리는 것을 획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위원장님, 전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도 성일종 위원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한 번 관계기관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고 국방부에서 어제 안을 저희한테 보여 줬는데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지는 못해 가지고, 아무튼 국방부하고 얘기를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ROTC 사관후보생들의 지원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그러면 좀 전향적으로 8만 원을 한 80만 원까지는 되는 방안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사실은 전투력에는 유형 전투력과 무형 전투력이 있어요. 이런 것은 다 무형 전투력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군이 그동안은 유형 전투력만 강조를 많이 했고 무형 전투력은 그냥 무조건 정신력 함양에 그냥 악과 깡으로 해 온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경제적인 여건도 마련을 해 줘야만이 무형 전투력이 올라간다는 것을 아시고 전향적으로,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도대체 기재부는 어느 정도를 전향적으로 하는 것인지, 최소한 한 세 배 정도는 아마 되어야 전향적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정도 되어도 사관생도나 또는 일반병사 봉급 정도 수준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동 안건은 지난 9월 22일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바 있는데 오늘 처리할 동일 제명의 법률안과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2건의 안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난 소위원회 심사결과와 오늘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의사일정 14항, 15항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 의원,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개정안은 2023년 9월 13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을 위

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한 죄 등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의 규정을 형법의 간첩죄 형량 수준인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외국 등을 위한 죄의 형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6쪽 하단에 보시면 최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외국에 대한 간첩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의견이 정리된 바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국방부는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두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개정규정의 처벌 형량에 관해서는 조수진 의원안과 같은 방식으로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 형량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군사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탐지·수집·누설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별로 구분하여 형량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상헌 의원안의 경우 군사기밀 보호법 제11·13조에서 기밀의 탐지·수집, 누설,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등의 처벌 형량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도 행위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양 개정안에서 다르게 규정된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인 단체를 포함)’ 조수진 의원안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외국인을 포함)’ 이상헌 의원안 중 형법 제102조를 참조하여 이상헌 의원안으로 검토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채익 위원 시대적 추세나 남북 분단상황에서 군사기밀 보호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2019년도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방금 정부 의견대로 이상헌 의원안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훈 위원** 그런데 죄를 줄 때 몇 년 이상으로 한다는 이 법안은 내가 볼 때 좀 이상해요.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상식에 맞다고 보는데 10년 이상으로 한다? ‘15년 이하로 한다’ 이렇게는 봤지만 이상으로 한다는 법은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이상을 이하로 할 수 있는 이런 법체계가 되어야지 이상으로 한다? 그것은 안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법을 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안, 지금 현행법에 되어 있는 대로 1년 이하면 1년 이하, 5년 이하면 5년 이하 이렇게 법을 정하는 것이 맞지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해요.

○**소위원장 김병주** 법무관리관, 잠깐 나와 보세요.

우리 군사기밀 보호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누설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량이? 어떻게 돼 있나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건 찾아봐야 되는데 아까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법정형에 상한형이 있고 하한형을 정하는 것이 10년 이상으로 한다 할 때, 중대범죄를 처벌할 때 그렇게 하한형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군사기밀 보호법 같은 경우에 형의 양형기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기밀 보호법의 일반 부분은 제가 조문을 외우지 못해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그것 좀 찾고 난 다음에……

○**국방정보본부국방보안암호정책과장 서병국** 보안암호정책과장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지금 직책이 뭐라 했지요?

○**국방정보본부국방보안암호정책과장 서병국** 보안암호정책과장 서병국 대령입니다.

지금 현재 군사기밀 보호법상의 누설에 대해서는 직무상 관계 있는 자가 수집하여 누설한 경우는 1년 이상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업무상·직무상 누설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것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방정보본부국방보안암호정책과장 서병국** 예, 그렇습니다. 외국을 위한 죄일 경우는 이것의 2분의 1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2분의 1을 더 추가한다는 말이지요?

○**국방정보본부국방보안암호정책과장 서병국** 예,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법의 원칙은 사실은 다른 법과 형평성도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군사기밀이 해외에 누출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지요, 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슷한 법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것만 또 가중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무관리관님 한번 의견 좀 얘기해 보세요, 전문가로서.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일단 입법정책적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군사기밀이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해서 누설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형을 줘서 이것을 엄단할 것인가의 판단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범죄를 얼마나 중한 범죄로 보고 형을 얼마나 세게 해서 이것을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훈 위원**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때요, 군사기밀 누설죄에 대해서?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다른 나라 사례의 경우에는 아직 조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설훈 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일단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유럽 국가들 중에서 어떤 상황이고 특히 미국은 어떤지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 보겠다고.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맞는데,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1년 이상 뒤였고 외국에는 그것보다 2분의 1 정도 형을 더 중하게 한다 이 원칙하고 그냥 법리상 원칙적인 측면에서 법무관리관이 전문가로서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라는 것이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정하지 않은 게……

○**소위원장 김병주** 오케이, 알았어요.

법무관리관, 들어가세요.

○**이채익 위원** 공무원인데 그 부분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보는데 저는 방금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특히 다른 국가와 달라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대처

중인 남북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군사기밀 보호법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히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신범철 차관이 얘기했던 이상헌 의원안으로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국방정보본부국방보안암호정책과장 서병국 보안암호정책과장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얘기해 보세요.

○국방정보본부국방보안암호정책과장 서병국 먼저 이 법을 발의하신 조수진 의원님과 이상헌 의원님께서는 법사위원이신데 동시에 형법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현재는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획득해서 수집·전파했을 경우에’, 그 조항이 있는데 거기 적국에 외국도, 그러니까 제삼국가 등을 포함한 외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면서 7년 이상으로 처하도록 신설을 하는데 연동해서 군사기밀 보호법도 그 규정에 맞게 개정하자는 의견이신데 현재 조수진 의원님께서는 탐지·수집하고 누설을 구분화해서 5년 이상 또 누설은 7년 이상으로 구분하고 계신데 이상헌 의원께서는 동일하게 탐지·수집하고 누설을 구분 없이 동일하게 무조건 7년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부 정부안은 조수진 의원안처럼 5년 이상하고 7년 이상으로 구분해서 하자는 게 국방부 안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현행법은 2분의 1 가중처벌로 돼 있지 않아요, 외국은?

○국방정보본부국방보안암호정책과장 서병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것을 여기에서는 몇 년으로 안 해 놓고 기존 군사기밀 누설보다 2분의 1 더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방정보본부국방보안암호정책과장 서병국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상에서는 외국 및 외국단체를 위한 규정이 있고 형법상에는 없는데 이번에 두 분께서 형법도 외국 및 외국인을 위한 형법을 만드니 형량을 거기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추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형법이 되는 걸 보고, 형법이 되면 또 형평성을 맞춰야 되잖아요, 군사기밀도. 형법 되

는 것을 보고 검토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들?

○설훈 위원 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형법이나 군사기밀 이런 법체계들도 제삼자, 선진국 시각에서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맞구나’ 이렇게 결정해야 국가 품격에 맞는 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올린다고 그래서, 이런 논리라면 ‘이왕이면 사형해 버리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 선배들이 했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도 전쟁 중이었을 것이고 대치 중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생각할 때 우리 국격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옥주 위원 궁금한 게……

○소위원장 김병주 송 위원님.

○송옥주 위원 그러면 법사위에서 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형법 개정안은 언제쯤 통과 계획이 있나요?

○국방정보본부국방보안암호정책과장 서병국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한 번 제1차 검토가 있으셨고 아직 통과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지식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천우정 이게 최근 논의가 9월 12일 날 있었습니다. 읽어 드린 바와 같이 자구수정이 일부가 합의된 바가 있는데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외국에 대한 간첩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으로는 금년도 내에는 되지 않을까 하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옥주 위원 어쨌든 이런 기밀과 관련된 부분들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대충 기준은 잡힌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천우정 예.

○송옥주 위원 그런 건 아니세요?

○전문위원 천우정 거기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 중입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데 누설이 아니라 나머지 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된 탐지나 수집과 관련된 것을 형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방위에서 정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데 한 분은 조수진 의원안으로 하자고 그러고 한 분은 이상현 의원안으로 하자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전문위원님 생각에는 어떤 법으로다가 형량을 맞추는 부분들을 검토할 만한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세요?

○전문위원 천우정 예, 드린 의견과 같이 개정 처벌 형량에 관해서는 조수진 의원안과 같은 방식으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 형량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일단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 법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사실은 우리 군사기밀이 외국에 가는, 누설되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법에는 적절점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저쪽 조수진 의원하고 이상현 의원 형법 한 것 있잖아요?

○전문위원 천우정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것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다음번에 이것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군에서도 설훈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라든가, 북한 이런 데 말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좀 그래도 민주주의국가 중에 선진국들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이런 사례들을 보고 우리가 결정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2개로 5년이나 7년이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법무관리관도 사실 의견 내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2쪽입니다.

16,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난 소위의 설명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뭘 하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다 안 하셔서 그런데, 이게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 사업 안에 포함을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설훈 위원 이게 뭐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좀 이상하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현재는 국방과학연구소 정관 안에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법률로 함으로써 이 사업의 추진을 좀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오늘 한기호 위원님이 안 오셔서 그런데 한기호 위원님이 아주 이것 대단히 반대하는 안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것 지난번에 한기호 위원님 속기록에 어떻게 돼 있냐면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교육원을 만들어서 OJT 교육만 한다, 그래서 수준이 낮다, 그래서 방위사업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이 지적 하나와 그다음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에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국방과학연구소도 방위사업교육원처럼 교육원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 그 두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두 번째, 이 법에서 국방과학연구소도 이 조항을 가지고 교육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한기호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교육원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석박사 과정을 위탁교육을 보내고 또는 장학제도를 해서 우수 인력을 조금 더 확보를 하겠다’ 그런 취지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앞에 말씀드린 방위사업교육원이 OJT 교육만 해서 수준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국의 획득대학 DAU 같은 것으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계획이고 거기서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나 정책적인 제도도 같이 하려고 DAU랑 MOU도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한기호 위원님이 깊게 연구를 해서 한번 얘기를 나

뒤 봤더니 한기호 위원님 말에 저는 되게 일리가 있다고 봤어요. 이것은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그때 얘기 나눈 걸 말씀드리면, 전에 국방대에 이런 학과가 있고 전문적으로 했는데 각 기관마다 연구소를 만들려고 사실 추진을 하지요, 자체 몸집을 늘리기 위해. 그래서 방사청이 방사청 관련 연구원을 만들고 연구소를 만들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교육원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교육원이지요. 그리고 국방대에서 교수들을 다 뽑아 왔는데 실제하는 수준이 되게 낮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지금 ADD에서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사업한다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 주면 나중에 또 ‘ADD 자체 교육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할 것을 사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각 기관마다 사실은 교육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래서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한 내용은 교육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훈 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대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연구원으로 가는 것은, 교육원으로 가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에요. 무조건 간다고,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체 내 규정에 따라서 교육원을 만들자고 자연스럽게 나와요. 교육원으로 가기 위한 절차라고 그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정관에 있으니까 정관대로 하면 되지 또 굳이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럴까…… 권위를 더 확실하게 못을 박기 위한 작업 같은데 지금 있는 대로 정관에 따라서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굳이 이것을 교육원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의지를, 의지는 좋지만 그렇게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연구소들도 다 ‘그러면 우리도 교육기관을 만들겠다’ 틀림없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소위원장 김병주 이것 보니까 한기호 위원님이 입장을 주고 갔네요, 보좌관한테 이 법안에 대해서. 법안 입장 질의는 폐기로 입장을 줬는데 ‘연구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사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은 폐기하고 관련하여 시행령 품수로 국회

미승인 사업으로 신설한 방위사업교육원 및 방산기업이 부담해야 할 업체 OJT 교육에 국비를 투입하는 방위사업계약학과 사업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제가 한기호 위원님 것 굳이 얘기하는 것은 이 분야에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고 작년 국정감사 때도 그것 때문에 ‘국방대 가자’ 그런 것 제가 거절을 해서 안 갔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면서도 예산을 최소로 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방과학, 저는 누구보다 ADD, 아마 설훈 위원님도 그렇고 국방위원들이 ADD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도 많아요, ADD를 키워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항목에 대해서 굳이 법안 속에 있어야 그게 양성이 되나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꼭 그런 것은 아님니다마는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렇게 지역적인, 또 대전에 있다 보니까 우수 인재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수 인재 확보 차원에서 이것을 법률에 넣어서 좀 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인데 저희가 한기호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이 정도로만 끝난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솔직히 여기 보면 양성에 관한 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장, 법적 근거가 있으면 훨씬 하기가 쉽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 교육원으로 막 가겠다 이럴까 봐 한기호 위원님도 그런 것이고.

○이재익 위원 오늘 한기호 위원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앞서가는 일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국방 관련 부분이 요즘 수출도 많이 하고 또 방산시장이 굉장히 확대되는 입장에서 이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역할은 계속 증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의 우수 인력들이 민간기업으로 많이 빠지고 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좀 잡아 두기 위해서는 법률에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또 방금 차장은 위탁교육 등 이런 쪽으로 얘기하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교육시설을 두는 것도

절대 나는 나쁘지 않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 교육원을 설립할 그런 생각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렇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래서 법률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부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李憲昇 위원 잠깐,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게 자료를 보니까 ‘국방과학연구소 최근 5년간 입사자 및 퇴사자 현황’ 이랬는데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훨씬 많은 경우도 있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거의 다네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거의 배 이상 되는데 이 원인이 뭐 때문에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대전이라는 지역적인 위치가 하나 크고 그리고 처우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정부출연기관의 평균 수준은 되지만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憲昇 위원 법으로 이 지위를 확실하게 해주면 퇴사율이 좀 낮아질까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올해 수당 같은 걸 내년 예산에 신설을 해서 처우개선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카이스트 같은 데에 국방 관련 기술 석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채용 조건으로 저희가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서 의무복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지역적인 한계나 처우개선에 대한 조건을 극복해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李憲昇 위원 저는 취지는 굉장히 타당하게 보이는데요.

○소위원장 김병주 저도 한기호 위원님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교육원까지 가지 않는…… 왜냐하면 지금 ADD만큼 사실 중요한 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또 지방에 있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선에서 가결시켜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채익 위원 설훈 선배님, 동의 좀 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병주 이 정도는 뭐 그래야 조금……

○설훈 위원 한기호 위원님 없는 자리에서 통과시키기가 좀 거시기한데.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저도 한기호 위원님 의견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차장 얘기대로 이 정도까지만, 이런 정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나올 것 같고요.

○설훈 위원 저는 의견을 안 낼 테니까 다른 위원들 동의한다면 동의하시지요.

○소위원장 김병주 예, 그렇게 하시지요.

○李憲昇 위원 정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데.

○소위원장 김병주 ADD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국방 법안소위 위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8쪽입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위사업청장이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관한 범죄경력조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무부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범죄경력조회 등의 대상에서 ‘직원’을 제외하고 구체화를 위해서 범죄경력조회 등의 요청에 대하여 국방부령으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보시면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도 검토 의견 및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보완 검토의견은 입법취지에는 공감

하지만 대상 법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방위사업법령 규정을 정비한 후에 그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까지 조회 대상으로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법사위 의결 이후 본회의 심의 중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군사기밀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위반하여 기술유출 등의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전문위원이 말씀했듯이 법무부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방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도 통과했습니다. 거기에 방위사업기술 보호법과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유출 침해 사고, 보안 사고 발생한 것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염려하는 그 부분 해소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직원까지 조회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직원 부분은 뺐기 때문에 법무부 의견은 다 수용이 됐다라고 보고 이 법안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동의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수정의견에 동의다?

오케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것은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문위원 천우정 위원장님, 그러면 현재 본회의에 우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있는데 이 사항까지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수정의견으로 가실 건지 그것을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미 본회의에 간 것을 대안

으로 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천우정 아닙니다. 대안 그것까지도 반영해서 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게 뭘 말이에요?

○전문위원 천우정 지금 본회의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있는데 수정의견에는 그 사항까지는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게 국회에서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통과를 전제로 해서 수정의견에다가 담을 수는 있습니다.

○설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법안 발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천우정 아닙니다. 우리 소위에서 그것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설훈 위원 우리 소위에서 결정하면 본회의장에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천우정 아닙니다. 지금 본회의에 가 있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아직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송옥주 위원 그것을 보류시키고……

○전문위원 천우정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로……

○설훈 위원 이것을 보류시키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수정해 가지고?

○소위원장 김병주 그럴 필요 없지.

○전문위원 천우정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설훈 위원 뭘 소리야……

○소위원장 김병주 따로따로 해도 문제없지요?

○전문위원 천우정 예, 따로따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李憲昇 위원 따로따로 합시다. 아이고, 복잡하게……

○전문위원 천우정 이것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것입니다. 지금 본회의에 가 있는 법은 그대로 통과가 될 예정인데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있는 수정의견을 통과된 법에 따라서 한 번 더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설훈 위원 아니,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냥 각각 통과시켜요. 뭘 복잡하게 생각해요?

○소위원장 김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16쪽입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 대표

발의입니다.

주요내용은 상표권 침해, 국산으로 가장된 외국산 물품 등을 '위조부품 등'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위조부품 취급 금지, 위조부품 취급 금지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17쪽입니다.

위조부품 등 취급 금지 및 처벌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안 제28조의2제1항제1호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으로, 안 제28조의2제1항제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물품'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안 제62조와 관련하여 위조부품 등의 정의를 구성하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 위조부품의 피해와 과급력이 현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으로 위조부품 예외규정인 안 제28조의2제2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 이하에서는 자구수정으로 목적어 및 문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위조부품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위조부품 취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공감을 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24쪽입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

차로 추진하되 동 절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안과제로서 안 제17조의2제2항은 국가연구개발 절차 적용에서 보안과제를 제외하고 있는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우주무기체계와 같이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은 모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보안과제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안과제로 분류된 사업을 제외하게 되면 입법취지와 달리 개정안의 다부처 사업 추진 절차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자구수정과 사업 주체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고 보안과제로서 보안과제 구성 사업 제외 부분을 삭제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30쪽입니다.

절차 추가로서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참여 부처와 협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절차를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 2에 보시면, 32페이지입니다. 본 법안은 다부처 사업인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나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서 참고자료 2에 보시다시피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거친 다음에 방위사업법에 따라서 방위사업분과위원회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 취지는 기본적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을 따르도록 해서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심의를 다 거친 경우에는 중복되는 방위사업법에 따라서 거쳐야 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30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동의 의견이 첫 번째가 현재 법에 따라서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가 중복되고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주개발 진흥법의 통일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인데 그래서 저희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서 절차를 단순화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동의 의견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 이것은 국가기관끼리 지금 의견이 다르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과기부하고 국방부하고 의견이 다른데 다른 상태에서 여기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빨리 조정을 해서 가지고 과기부를 설득을 하든지, 설득을 해서 한 의견이 나와서 국회에 가져와야지 정부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상태로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총리가 나서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조정을 하든지 그래서 정리를 해서 가져와야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래서 저희가 과기부랑 지속적으로……

○소위원장 김병주 이것은 제가 발의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절실합니다. 지금 과기부하고는, 그동안은 국가우주위원회를 과기부장관이 2년 전까지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가 우주하는 데 엄청나게 지장이 많이 돼서 2년 전에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해서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로 격상을 했고요,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로 격상을 하려고 해요, 이것을.

대통령이 통제하지 않으면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과기부나 전부 의견이 틀리고 조율이 안 되는 사안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도 해야 되고 군사위성도 쏘아 주고 하는데 지금 이 프로세스로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도 못 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하고 국가우주위원회가 국가 최고기관거든요. 여기에서 심의가 다 끝나면 이미 사업으로 가게 돼 있는데 다시 또 와서 방위사업 프로세스를 거치니까 너무 이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는 자꾸 트집을 잡기 위한 건데 이것은 저는 국방위에서 우리가 이런 국방 우주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2주 전에 장제원 과기위원장하고 박성중 간사하고 김진표 의장님, 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국가우주위원회는 대통령으로 가야 되고, 국방부가 너무 그동안 과기부에서 모든 것을 간섭하다 보니까 우주 발전이 더디다 그래서 대통령실로 가고. 그다음에 우주청 자체도 과기부 밑에 자꾸 두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또 산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컨센서스는 돼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 분야에 오랫동안 관여해 왔는데 이것은 사실은 좀 절실한 법입니다.

과기부하고는 이것이 일치될 수가 없고 법이 발의가 되면 아마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설훈 위원 그렇지만, 말씀은 맞아요. 우리는 국방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입장을 손들 수 밖에 없을 터인데, 그러나 국가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부부처 내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다면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이 안 돼요, 이것은. 국무회의는 왜 있습니까? 국무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야지요. 이것을 논의도 안 하고 와 가지고 지금 와서 ‘국방위에서 통과시킬 테니 과기부는 따라 오라’…… 국가 경영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내에서 조정을 해서 ‘이게 답이다’ 하고 내려 오든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국방부만 자체적으로 ‘입장이 이러니까 과기부하고 상관 없이 우리는 간다’ 이것은 안 돼요. 조정할 때까지 통과를 못 시킵니다.

○이채익 위원 저도 설훈 위원님하고 대동소이한 생각을 갖는데, 우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가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자 하고 있잖아요. 야당의 협조가 아직 좀 미흡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 과기부 부동의 의견 보면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된 후에 세부 논의를 하는 게 맞다 하는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내가 국방위에 있지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과기부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방금 설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부처끼리 국방부하고 방사청하고 과기부가

먼저 합의해서 그렇게 우리 국방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게 맞다. 지금 분명히 이래 되면 법사위에서 과기부장관은 적극적으로 반대할 텐데 이 법이 통과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급한 일이지만 먼저 좀 선결 과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렇게 심의하는 게 맞겠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런데 과기부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거치라 마라 할 권한이 있나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지금 과기부랑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어제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이채익 위원님 말씀대로 우주항공청 설립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정리하고 하자는 건데 이 입법하는 이유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사실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이야기했지만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고 현재 과방위에서 심의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한 정부부처 간의 역할·기능 조정 문제는 지금 협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국방부나 과기부 간에 우주항공청 설립에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쟁점이 다 해소된 상태이고 그래서 우주항공청 설립법이 통과될 때 이것도 같이 통과되면 저희 김병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부처 사업으로 가고 있는 사업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과기부가 지금 보면 그동안 우주 분야는 너무 쓸데없이 국방부를 간섭해서 아직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발사장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허락을 하는 것 같이 해서. 그래서 아주 이것이 심각한 정도고 이것은 솔직히 부처끼리 협의는 안 됩니다. 과기부와 국방부에 맡겨서는 되지 않고 아까 설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무회의든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2년 전에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그 정도 파워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기부가 방위산업에 관계된 것을 자기들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그것을 왜, 그다음 프로세스는 국방부가 알아서 하는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거치라 마라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국가우주위원회까지의 의

견은 과기부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고, 국가우주위원회가 끝난 다음에는 국방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과기부는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과기부의 의견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이런 것을 거쳐라 이것까지는 관여해도 되는데 그 이후는 과기부의 의견에 따라서 국방부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지간하면 오늘 통과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두 분이 반대를 하시니……

방사청 차장님은, 이게 조금 복잡하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소위 위원님들한테 특히 설훈 위원님하고 이채익 위원님한테 꼭 가서, 이런 그동안 애로사항들 있잖아요. 그걸 좀 보고를 하고 다음번에 최우선적으로 이것은 좀 올렸으면 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서 다 토의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설훈 위원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전적으로 받아들이겠고 어쨌든 다음번에 논의하더라도 과기부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알겠습니다.

○설훈 위원 과기부하고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오면 할 수가 없어요. 국가 경영이 그런 것 아닙니까? 기재부하고 의견이 다르면 기재부하고 조정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나오는 게 이 자리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과기부하고 안 맞으면 과기부하고 의견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이 안 되면 여기 가져오면 안 돼요.

○李憲昇 위원 저도 설훈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이 있잖아요. 그게 부처 간의 그것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李憲昇 위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올려 가지고 그것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진보·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지금까지 못 했어요. 어떤 정부도 못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1대 국방위에서 우리가 해결 못 해 주면, 지금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인데 우리 국방우주력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방위사업차장님은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하고 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 보고, 안 되면 저는 국방위에서라도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번 보고를 받아 보시고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9월 22일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바 있는데 오늘 처리할 동일 제명의 법률안과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전에 제가 말을 좀 덜한 게 있는데 특히 국방우주력과 관계된 것은 그동안 우리 한미 미사일 지침의 규제를 받아 오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이지요, 그때 2년인가 3년 전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그야말로 국방우주력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이것은 절실합니다.

우주력을, 그래서 우리가 과기부 얘기 꼭 참고는 해야 되겠지요. 기재부 얘기 참고는 해야 되지만 100% 기재부나 과기부가 동의해야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설훈 위원** 그것은 김병주 위원의 생각일 것이고 국가 경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를 왜 뒀니까? 부서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면 그건 조정을 해야지요. 조정해서 국회에 나와야지 조정 안 하고 나오는 것은, 일방적으로 국방부 의견만 몰아가는 이견 있을 수가 없어요. 뻔한 얘기를 왜 자꾸 하게 하는 거야, 정 안 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그런 것 아니에요? 국가 경영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걸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국방부하고 방사청하고 합의해서 과기부하고 어떤 식이든 합의를 하세요. 안 되면 대통령이 결정하시게 해야 해요. 그게 국가 경영이지요. 그리고 여기 와야 돼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및 18항, 2건의 안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난 소위원회 심사결과와 오늘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

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3시 40분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36쪽입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품 국산화개발’을 ‘부품 개발’로 대체하고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37쪽입니다.

‘부품 국산화개발’을 ‘부품 개발’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자구수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설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의 업무 조정에 관하여 기존 기품원(국기연) 수행 업무를 방위산업부품연구원으로 이관하지 않고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의 업무를 부품 개발, 부품 성능시험, 부품 개발 관련 정책·제도 연구 등 신규 업무로 한정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그 외에도 세부적인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최근의 전쟁은 드론의

역할이 굉장히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군사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군에 보급되었던 651대의 교육용 드론들의 부품을 조사해 보니 중국제라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중국제 부품의 경우에는 스파잉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훈 위원**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전문위원 천우정** 중국제 부품의 경우에는 백도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정보가 중국으로 누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경우에는 중국제가 아닌 국산을 쓰는 걸 군에서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에서 이것하면 되지 않겠냐’고 기재부는 얘기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은 중국제를 아직까지는 당해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 분야에서는 중국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가 외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드론은 전쟁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드론을 위해서라도 이 부품연구원은 필히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군사 분야에서는 국방 반도체에 대한 개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은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방위산업연구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전문위원 천우정**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신설한다는 것 아니야?

○**전문위원 천우정** 예.

○**소위원장 김병주** 어디에다 신설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천우정** 창원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기품원 밑이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이 법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품 국산화 개발의 범위를 확대해서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부품 개발’로 용어를 대체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품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을 신설하는 내용

입니다. 그 신설에 동의를 하고, 다만 수정의견으로 종전에 기품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일부 중복되는 기능을 삭제하고 신규 사업으로만 부품연구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이 냈습니다. 그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거기에 따른 부칙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 그런데 이게 부품연구원을 또 따로 별도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방사청 내에다가 두면 안 돼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품 연구를?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부품 연구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

○**설훈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기존 기품원에서 해외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업체 자체적으로 하는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기관을 자꾸 만든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있는 기구에서 그것을 확대하든지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계속해서 만들면 끝이 없어요, 이게. 국가 경제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이런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부품 연구를 기품원에서 하고 있다면 기품원에서 이것을 더 발전시키게끔 하는 무슨 과를 더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또 연구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뭐 필요하면 연구원, 연구원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기관들이 많아진다고.

지금 국가 공공기관이 몇 개나 된다고 봅니까? 차관, 몇 개나 됩니까?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

○**설훈 위원** 기재부가 알겠네요. 몇 개나 됩니까?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허락해 주시면 기재부가 그걸 포함해서 저희 쪽 의견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기재부 의견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예, 지금 공공기관 관련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공공정책국의 경영관리과장이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예.

○기획재정부경영관리과장 최우석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장 최우석입니다.

올해 공공기관 지정된 개수는 347개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 신설 관련해서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정책 방향 관련해서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기관 정책 방향은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이런 인력·기능·조직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민간시장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효율화하고 기관 수도 되도록이면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신설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엄격히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부품연구원 기관 신설이…… 기관 신설 타당성 그리고 효과성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산 부품 특성이라는 게 다품종이고 소량 생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부품 연구를 하려면 장비나 설비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아주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 산하에 연구기관을 두는 것이 이렇게 방산 부품의 다양한 특성이나 인프라 구축에 따른 큰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지, 한계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간시장하의 역할 분담 측면에서 보면 지금 부품 사업 공모할 때 국방기술진흥연구소-기품원 산하기관입니다-에서 부품 사업을 공모할 때,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제외하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중소기업이나 민간……

○소위원장 김병주 핵심만 얘기하세요. 지금 뭐 뭐뭐가, 이걸 왜 부동의하는지 그것만 얘기해야지.

○기획재정부경영관리과장 최우석 예, 민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건데 부품연구원을 설립하면 이런 중소기업, 민간시장을 구축하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기관을 활용하거나……

○소위원장 김병주 알았어요. 지금 이 의견은 기재부 의견보다 오늘 행안위를 참가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불출석하는 걸로 했지요.

오케이, 들어가세요.

기재부는 뭐든지 반대하잖아요, 조금만 예산 더 들면. 이 조직에 대해서 기재부가 반대할 의무가 없지, 왜 기재부가 여기에 대해서……

○설훈 위원 본 위원의 기억에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공공기관이 백몇십 개 됐었어요. 그러니까 98년도부터 계산해 보면 그랬는데 지금 삼백몇 개라고 그랬지요?

○기획재정부경영관리과장 최우석 347개요.

○설훈 위원 347개, 배가 넘게 나왔어요. 끊임없이 이게, 물론 국가 규모가 커지니까 공공기관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런 식으로 커져 가면 정부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봐요.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 나가면,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키우려고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예요. 어느 집단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뭘 하나 더 만들고 더 만들고 더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재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국방부 내에서도 이걸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계속 부품 연구 필요하지요. 필요하다 그래서 기관을 또 만들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이것은 기품원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좀 더 확대시켜 주든지 해야지 따로 부품연구원을 만들면 우스꽝스러워요. 부품까지도 연구원을 만들어서 한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품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품원 기능을 좀 더 확장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위원장님, 한마디만 첨언만……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됐어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잠깐 짧게 한마디만……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기재부 의견은 충분했고. 이것은 기재부 의견 들을 게 아니에요. 행안부 의견을 들으려고 내가 요구한 것이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도 뒤에 가서 앉았다가 나오라고 할 때 나오세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앞에 앉으니까 똑같이 의사 교환하려 하는데 뒤에 가 앉아 계셨다가, 기재부의 의견 필요할 때 얘기할 테니까요.

○李憲昇 위원 제가 조금 할까요?

○소위원장 김병주 예, 말씀하십시오.

○李憲昇 위원 조금 전에 기재부에서 ‘민간이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새로 신설하면 민간기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소량 생산이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이득이 많이 듭니다. 민간에서 이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차제에 정부에서 이런 기관도 하나 필요하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국방물자 해외에서 조달하는 비율을 보니까 17년도에 30.3%, 21년도에는 31.7%. 무기체계 부품 해외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수출 무기가 지금 다변화되고 있는데 각 국가별로 요구하는 사항도 다르고 또 수출국 확대를 위해서는 무기체계 개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 기관 설립이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원장 김병주 차관님, 이게 왜 불쑥 나왔지요? 차관님 혹시 아세요? 이것 예를 들어서 국방개혁 4.0이나 2.0이나 이런 데 있는 적이 있었나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그보다도 창원을 지역구로 하는 그쪽에서 부품 문제 관련해서 관심을 두고 그래서 김영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국방개혁 4.0이나 2.0에는 이런 게 있었나요, 차장님?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방산 강국으로 가려면 핵심 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첨단 소재……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그래서 이것이 차관님 말씀대로 제가 봤을 때 여기 김영선 의원님 그쪽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지요, 사실은. 그리고 필요성도 있고, 뭐 이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무한정 이런 기관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방사청에서도 장기계획 속에 이런 계획이 있는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계획

이?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장기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책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책의 위원 방사청 차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여러 가지 인프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산 부품과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조직이나 기구는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별도로 조직이나 기구는 없고 방산고도화지원과에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무적인 업무는 기품원 산하기관인, 부설기관인 국기연에서 방산 육성 진흥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수입 부품을 대체하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입 부품을 대체하는 부품 국산화 사업을 경제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책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방산 부품과 관련해서 ADD하고 기품원하고는 중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없습니다.

○이책의 위원 그것은 중첩되는 부분은 없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이책의 위원 그리고 방산 부품은 대충 현재로 봤을 때 종류가 한 몇 종류 정도 돼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종류는 예를 들면 훈련기 정도만 해도 수만 중에 이룹니다, 부품의 종류가. 수십만 중에 이룹니다.

○이책의 위원 수십만 중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방산부품연구원을 둔다고 하면 인력의 규모나 예산 규모나 이것은 대충 추정이 나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예산 추계는 참고 자료에 나와 있고 인력 규모는 저희가 한 사오백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책의 위원 그런데 방산부품연구원과 관련해서 용역이나 토론회나 이런 의견수렴 과정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지금 경남 창원 지역에 방산기업들이 많고 그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부품연구원의 신설,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또는 연구용역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은 했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적극적으로 해 볼 만하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이채익 위원** 저는 사실 이게 옥상옥이나 중첩되지 않는다면 방금 방사청 차장의 보고를 보면 지금 현재의 부품 연구에는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게 거의 전무한 것이고 이 시장이 무궁무진하다고 본다면 방산부품연구원 설립도 저는 동의하고 또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저는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이 자료집 55페이지를 보니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연구원을 설립할 때 재정 소요 추계가 나와 있네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내년부터 해서 일단 28년까지 합산된 총액이 1028억 원 정도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계속 이게 운영이 돼야 되니까 해마다 조금씩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 반영이 돼서 전반적인 사업비가 더 추가되고 증가되는 그런 추이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재정 소요가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기품원, 국기연에서 이미 부품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47페이지를 보니까 기품원에서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부품 개발 관련된 것은 기품원이 그냥 수행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일부를 째 빼서 이 연구원을 새로 만들어서 여기서 역할을 주자라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기존의 조직이라든지 기관을 새로 만들 때에는 그런 역할이 전혀 없고 또 절실하게 필요하고 긴박하고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직이나 기관이나 공기업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버젓이 지금 하고 있는 기품원이나 국기연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를 좀 더 강화해서 역할을 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연구원이나 공공기관을 만드는 것은 물론 지역구 의원이 주장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은 종합계획이라든지 또 국방부 차원이나 다른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한 후

에 이 부분들을 검토해야지 그냥 어디서 툭 떨어지듯이 법안을 개정을 해서 검토하는 부분들은 좀 현실적이거나 타당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요, 잠깐만요.

기품원이 2년 전에 조직이 또 2개 증강됐잖아요. 뭐뭐로 나누어졌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기품원에 있는 일부 기능을 방산 육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산 육성과 기술 기획 기능을 빼서 국기연을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국기연을 새로 또 만들었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부설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부설기관으로 2년 전에 기품원에서 새로 하나 만들었고, 방사청 안에 아까 교육원은 언제 만들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교육원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소위원장 김병주** 하여튼 몇 년 전에 교육원 만들었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한 3년, 4년 정도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지금 이런 조직을 또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런 조직은 국방부 차원에서 국방개혁 4.0 속에 전체 마스터플랜 속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들어가 주면 좋은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민원 법안처럼 이렇게 올라온 것을 법으로 통과하는 건 걱정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도 위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나고 하니까 이것은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방사청에만 맡기지 말고 이것은 국방부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에 진짜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러면 국방개혁 4.0에 포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한다면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민원법성으로, 제가 얼핏 보니까 창원을 두신 의원님께서 거기에 소요를 하고 방사청은 늘어나니까 ‘얼짜 좋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 같으니까 이것은 더 신중해야 되겠다.

기재부 국장님, 뒤로 가게 해서 미안한데 기재부에서도 반대하고, 이번에는 내가 기재부 의견을

적극 손들어준 것이니까……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다음에 한번 다시 논의를 좀 더 하시는 게 어떨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뢰에 대한 건 마지막으로 하고.

방사청 안 계셔도 되지요?

그러면 방사청 차장님 수고했어요. 떠나서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되는 조금 이따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2쪽입니다.

2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하단에 보시면 다만 현행 제6조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제한이고 21년 말부터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소음저감 방안, 보상금 지급 등 소음대책사업이 단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 경과를 지켜본 후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삭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안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25년까지는 현재 기본계획(20년 12월 31일 수립)에 따르면 소음 저감 방안, 보상금 지급 등 소음대책사업이 단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므로 현행 법률의 정책효과를 좀 더 지켜본 후에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을 검토한다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방부도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은 공항소음방지법 비교 시 최소한의 제한이며 소음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은 중기계획 성격의 계획이므로 현행 법률의 정책효과를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 성일종 의원이 와서 얘기를 해야 이게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될 터인데 소음피해가 심각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격장이나 이런 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아주 절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성일종 의원께서 최소한의 제한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국방부하고 지금 의견이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국방부도 이것 계속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소위원장 김병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채익 위원 지금 군사격장·군용비행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전국적인 사정일 거예요. 지금 충남 서산 해미 거기에 공군비행장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도 당연히 하고 또 이런 법안을 냈는데 방금 설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숙성시키고 의견을 좀 더 나눠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28항까지 3건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천우정 26항부터 28항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강대식·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소음영향도)에 별도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김형동 의원안은 마을·부락 단위를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에 추가를 하고 강대식 의원안은 건축법에 따른 시설의 경계 또는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을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에 추가, 송옥주 의원안은 동·리 구역 경계를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에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국방부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지 설정 기준 완화가 필요하나 추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경계지 기준에 대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기획재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지속적인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개정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17쪽입니다.

2, 소음대책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형동 의원안 제7조의2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음대책사업계획 수립·시행, 소음대책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청구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19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군소음보상법에 중기계획이라는 표현은 없고 기본계획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도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추가적인 예산 소요 등 국방재원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21쪽입니다.

토지매수청구권 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방부 의견은 토지매수청구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국방재원에 부담이 되며 소음피해 보상과 토지 매수 둘 다 가능하게 될 경우 발생할 민간공항 주변 주민과의 역차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5쪽입니다.

주민지원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안 제10조의2에서 주민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민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방부도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경계지 설정 기준 완화, 소음대책사업, 토지매수청구, 주민지원사업 등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또 다른 형평성 문제 발생 여지와 재정부담 가중 등의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 완화는 그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추가 재정 소요 증가 수준 등이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대책사업 신설과 관련해서는 주민대책사업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역시 추가적인 예산 소요 등 국방재원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매수청구 근거 신설과 관련해서는 토지매수청구권이 국방재원에 부담이 되며 소음피해 보상과 토지 매수 둘 다 가능하게 될 경우 발생할 민간공항 주변 주민과의 역차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 신설과 관련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추가적인 예산 소요 등 국방재원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오전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은 저희 화성시 양감면 주변에 오산 군비행장이 있어서 주민들의 소음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소음도를 측정을 해서 기준을 삼아서 보상을 해 주고 안 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옆집은 보상을 받는데, 그 옆집도 똑같은 소음피해를 받는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는 또 해당이 안 돼?’라고 해서 불만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명확한 경계 기준과 설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이 중에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더 많은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소음을 측정하는 데 보면 정말로 시끄러울 때 와서, 소음 기준이 높을 때 와서 측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심아라든지 아니면 기온이 낮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소음도를 측정을 해야지만 본인들이 보상 대상이 되는데 그냥 시끄럽고 주변이 환할 때 와서 하거나 낮시간에 하거나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소음 정도를 측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 자료의 29페이지를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특히나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공항소음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이 소음 보상에 대한 기준이 75웨클이고요. 군소음 보상법 국방부에서 하는 것은 85, 80 이런 수준이라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소음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국방부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의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감내하는 국민들의 어떤 노고가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가 않고, 장기간 동안 본인들이 재산상·정신상 여러 가지 물리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법을 내게 된 부분인 것이고요.

또 이 법에 맞춰서 국방부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검토 없이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너무 주민들의 민원을 소홀히 경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설훈 위원** 물론 재정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재정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순위를 매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심한 지역부터 해서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니까 재정 문제를 가지고 이게 된다, 안 된다는 결정하는 것은 나는 이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통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떤 식이든 보상이 돼야 그게 국가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지 고통은 고통대로 주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러면 누가 국가를 그냥 믿고 모든 걸 맡겨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정 문제는 재정 문제대로 생각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하면 되니까 재정 문제를 따두고 이걸 해결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군 소음 부분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봐요. 이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차근차근, 시행령으로 규정하든지 해서 차근차근 보상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지역이 많아요. 전방지역 같은 데 사격장 근처가 보면 그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주시켜 달라는데 이주시켜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 토지를 수용하는 수밖에 없지요.

과감한 정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수십 년간 있어 왔던 민원들인데 이걸 과감하게 우리가 해결하도록 하자고요. 나는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부차관 신범철** 위원장님, 기회 주시면 약간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행령으로라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송옥주 의원님이나 김형동 의원님이 주신 안은 액수가 너무 커서 3000억 대가량 증액이 돼야 되고 강대식 의원님 안은 그 금액이 훨씬 적어서 시행령 차원에서는 강대식 의원님 안을 준비를 해 온 것은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타 부처, 특히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 소음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씩조금씩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강대식 안으로 하면 되겠어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시설기획관이 부연설명……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소위원장 김병주** 예.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저희가 작년 11월 17일 날 법안소위를 했었습니다, 그때.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했는데도 아직도 왜 안……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저희가 그동안 한 노력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충설명 자료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계지 완화에 대해서 김형동 의원님 안하고 송옥주 의원님 안에 대해서 설명을 심사자료 27페이지에 있는 수원 비행장 소음등고선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등고선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동·리를 경계로 나누면 권선동은 일부 등고선이 지나가니까 동을 포함하게 되면 권선동 전체가 들어갑니다. 거리가 굉장히 멀어도 권선동 전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 위의 매산로3가 위에 있는 고등동은 더 비행장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등고선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동은 다 제외가 됩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차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동·리를 기준으로 하면 3500억 정도의 추가 재정 소요가 있는 걸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부에서는 좀 완화하는 걸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설명자료에서 보시면 지금 법에서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어서 시행령 개정을 계속 마련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은 이렇게 돼 있는 걸 개정안으로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도시지역은 필지의 경계를 가지고 인접하는 지번까지 필지까지, 비도시지역은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을 경계로 완화하는 것들을 검토했고요.

그 개념이 뒤의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은 소음등고선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건물까지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녹색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소음등고선이 지나가는 건물의 필지 인접지번, 왼쪽 그림의 파란색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비도시지역은 지형지물과 도로·하천 등의 경계를 설정을 해서 마을 단위까지 포함하도록, 그래서 파란색 부분의 가구가 들어가는 것들로 산정을 경계 완화를 했을 때 연간 45.7억 원 정도의 비용추계가 돼서 이걸로 지금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이 부분을 법에 넣으면 될 것 아니야, 이 부분을.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지금 아직 기재부 협의가 안 끝나서 저희는 지금……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기재부 협의는 여기서 하던 되는 것이고. 45억 정도야 뭐……

사실은 소음에 대한 것은 진짜 피해를 그동안 받아 왔고 그래서 소음 관련 법안이 됐는데 경계 같은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검토한 것이 아주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저도 그 안을 제시하려고 했었거든요.

저기 전방지역이나 시골지역 같은 데는 이렇게 구획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마을 전체가 들어간다는가 무슨 강이나 하천 이런 저명한 걸로 갔을 때 불만이 없는 것이고, 도시는 잘했다고 봐요.

그럼 이것을 이 법 안에 넣어서 통과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그게 지금 강대식 의원안과 유사하고 그게 민간공항법도 그런 개념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그것을 넣어서 오늘 통과하면 어때요?

전문위원님, 그렇게 좀 자구수정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천우정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위원장님, 그래도 기재부의 의견을……

○설훈 위원 기재부는 어때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기재부는……

○송옥주 위원 반대지.

○설훈 위원 설명을 받아 주지요.

○소위원장 김병주 기재부는 그 정도는 뭐……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저희들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훈 위원 앞으로 와서 얘기해요. 안 들려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유수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국방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담은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협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린 부분은 그렇습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이나 강대식 의원님 안이나 김형동 의원님 안

모두가 공통적인 부분은 설정을 해 놓고 나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되게 조밀조밀 돼 있지 않습니까, 마을들이나 도시나. 이리다 보니까 그 형평 문제는 그냥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 기준으로 해 놓으면 옆 건물에서는 ‘나는 바로 길 건너 하나인데 나는 왜 안 해주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차별성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사실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 아직 지금 결론을 못 내려 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 그건 계속 지금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요, 조금씩 개정하는 게.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지금 협의하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지금 국방부 안대로 비도시지역은 도로·하천 등 지형지물을 고려한 경계선 이건 아주 합당하다고 보여져요, 비도시.

도시지역이 좀 문제인데 소음등고선에 걸치거나 포함된 건물이 속한 필지잖아요. 필지하고 연결지번까지는 해 줘야 된다. 그동안은 건물만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데 이 정도만 해도 불만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작년 11월에 이미 또 했는데 국방부하고 기재부가 아직도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 정도로 해 보고 또 보완이 된다면 또 보완 입법을 내면 되는 것이니까, 22대에 가서든 하면 되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3건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25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지뢰의 제거 등 지뢰

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이상 4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2쪽입니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훈·조은희·정부·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뢰 제거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3쪽입니다.

조문대비표 참고사항으로 기본적으로 김병주 의원안과 정부안을 바탕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률의 제명입니다. 김병주 의원안·정부안 제명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법률의 목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국토를 평화적·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정의견으로는 ‘평화적·효율적 이용’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정의 규정은 법률안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을 보시면 설훈 의원안을 반영하여 ‘지뢰 제거’에 유기탄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김병주 의원안·정부안의 ‘지뢰대응활동’ 정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지뢰 제거의 기본 원칙입니다.

네 가지 안 모두 지뢰 제거의 기본 원칙으로 국민의 안전 도모 및 환경 오염 방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김병주 의원안·정부안의 기본 원칙으로 통합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하여 지뢰 등의 안전한 제거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정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국가 등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설훈·김병주 의원안은 지자체에도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설훈 의원안은 지뢰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설훈 의원안 중심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병주 의원안·정부안은 군이 고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으로는 군이 군사적 목적의 작전, 교육, 훈련 등 고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뢰를 탐지·제거할 경우에는 전술 교리, 교범 등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동 제정안의 지뢰대응활동과 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지뢰 등을 제거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네 가지 안 모두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어 지뢰대응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동 제정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은 정부안으로 통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5쪽 하단부터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지뢰대응활동의 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으로는 정부안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자체가 공고하도록 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안을 통합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토 및 수정의견으로는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제5호에서 ‘지뢰등의 제거 완료 지역’으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지뢰대응활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으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제량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위원의 임기를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년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의견으로는 행안부는 정부의 위원회 감축기조 및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 등을 고려하여 활동위원회 설치를 임의 규정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지뢰대응활동센터, 지뢰대응활동센터를 설치하여 지뢰 제거 등(설훈 의원안), 기본계획 수립 등(김병주 의원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사전 조치와 관련해서 검토 및 수정의견으로는 지뢰제거자는 유사시 응급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해 놓아야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전 조치 중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지뢰등의 탐지·제거 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으로 민간에 지뢰 제거 허용여부가 관건이 되겠는데 설훈 의원안 및 정부안은 민간에서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지뢰 제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의 연구·경험 전문성과 기술력을 지뢰 제거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지뢰등 탐지·제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으로는 수정의견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뢰 등의 제거 완료지역’으로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즉시 인계가 어려울 경우에 김병주 의원안, 정부안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뢰제거자가 설치해야 하는

임시보관시설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검증 완료 지역에 대한 조치입니다.

검증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개방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으로는 국방부의 설명에 의하면 검증이란 적합한 기준·절차·방법에 따라서 지뢰 제거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더 이상 해당 지역에 지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증이 완료되어 정부안과 같이 지뢰 등의 안전지역으로 확정하더라도 100% 안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안전지역’이라는 용어 사용은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검증이 완료된 지역의 토지개방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개방이 확정된 지역의 지자 체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뢰 등 발견 시의 조치, 누구든지 지뢰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공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국방부장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으로는 지뢰 등을 발견했을 경우 관공서에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관공서를 타 법률을 참조하여 수정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입니다.

지뢰제거자가 실행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국방부장관이 관리감독하고 만약 정해진 절차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으로는 수정의견 제18조제2항은 정부안 제12조제2항의 문구 ‘2, 지뢰제거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뢰등의 탐지·제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참조하여 ‘안전사고 또는 주변 환경의 오염 우려가 있거나’로 문구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66쪽입니다.

지뢰제거자 대행계약의 해지,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 보유장비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으로는 정부안 제18조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뢰제거자에게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사유가 중하다고 판단한 제1항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의 해지를 강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호 대행업자의 보유장비, 인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해지 강행 사유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제1호에 따른 경우에도 대행계약을 해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뢰대응활동표준, 국방부장관은 지뢰 등의 탐지·제거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지뢰 제거 후 안전한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지뢰행동기준(IMAS)에 기반하되 남북 휴전 및 군사대치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는데 정부안은 이를 반영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수정의견 제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심의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실태조사, 제정안은 네 가지 안 모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으로는 네 가지 안 모두 실태조사의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77쪽입니다.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입니다.

국방부장관 또는 지뢰제거자는 지뢰 등의 탐지·제거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타인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으로는 정부안 제22조제1항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타인 토지 출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뢰 등의 제거는 군인들도 실시한다는 점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외에 군인도 아울러 규정하였습니다.

정부안 제22조제5항은 지뢰 등을 발견하여 현

장 조사가 필요하고 민간인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통지나 동의 없이 조사·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위를 종료하면 지체 없이 해당 토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행위를 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부안 제22조제4항과 같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안 제22조제4항에 따라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하는 것으로 통지가 완료된 것으로 볼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벌칙, 양벌 규정, 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 및 수정의견으로는 정부안 제28조제2항제1호와 제2호는 지뢰 제거자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뢰 등 탐지·제거 업무에 착수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과태료인데 안 제28조제2항제1호의 안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뢰 등의 탐지·제거 업무에 착수한 자와 안 제28조제2항제2호의 안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동일하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11조제3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착수 승인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므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법률안을 발의하신 세 분 의원실과 10여 차례 협의하여 의견 접근을 하였고 그 내용은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8개 조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의견을 드리고자 하오니 국방부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4조(국가 등의 책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훈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해서 용어를 ‘지뢰행동’에서 ‘지뢰대응활동’으로 변경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뢰대응활동은 군사적 목적을 상실한 지뢰 등의 제거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책무 규정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6조(국제지뢰행동의 날)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기념일을 국내법으로 다시 규정하여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기본으로 김병주 의원님 안을 반영해서 확정된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가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기본계획 전체를 공고하는 것보다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6항 전문위원 수정의견 중 ‘그 기본계획’이 파트를 ‘지뢰 위험지역 등 필요한 정보’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기본으로 해서 김병주 의원님 안을 반영해서 확정된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가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한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시행계획 전체를 공고하는 것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과 같이 전문위원 수정의견 중 ‘그 시행계획’을 ‘지뢰 위험지역 등 필요한 정보’로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0조(지뢰대응활동센터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김병주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조문의 제목을 변경, 그러니까 ‘지뢰대응활동센터의 설치’를 ‘지뢰대응활동센터’로 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뢰대응활동센터는 법률 제정의 취지와 전담 조직에 대한 유엔 및 국민권익위의 권고 등을 고려

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11조(지뢰등의 탐지·제거 주체)와 관련해서는 지뢰 등의 탐지·제거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 필요시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 정부안을 기본으로 조문의 제목 ‘지뢰등의 탐지·제거’를 ‘지뢰등의 탐지·제거 주체’로 이렇게 변경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도적 목적의 지뢰 제거에 민간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간 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기호 위원님의 쟁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개가 더 있는데요. 지뢰 제거 교육 및 훈련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뢰 제거 업무의 책임감, 전문성 등을 고려 시 지뢰 제거 교육 및 훈련을 민간에 대행하게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 등의 수용·사용과 관련해서는 지뢰 제거 시 토지 사용은 일시적이므로 수용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6·25 당시에 뿌렸던 이 지뢰가 아직도 우리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물론 지뢰 피해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뢰 피해가 해마다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전국 도처에 지뢰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민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되는데 이제서야 이게 제정안으로서 나왔더라는 게 참으로 탄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법안을 법률로 만들어서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각지에 지뢰가 다 묻혀 있습니다. 어디라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를 시켜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판

단을 하게 되면 이 법안을 부분적으로 손보는 것은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정부도 지금 동의하고 있고 또 여러 위원들이 갖고 있는 의견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서 상임위에 넘기고 올해 안에 이 법안이 법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 오늘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 또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 지뢰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등 여러 가지 지뢰와 관련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여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력 감소, 복무기간 단축으로 군이 지뢰 제거에 투입할 병력은 여력이 없다 그리고 지뢰 제거기술과 전문성 축적도 어렵다, 반면 전후방지역에 군이 매설·관리하는 지뢰가 총 82만 8000발로 추정되고 미확인 지뢰지대 202개소의 면적은 기 설치 지뢰지대의 5.2배에 달한다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능력만으로 지뢰를 제거할 경우 장기간 소요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은 민간 국제 단체가 지뢰제거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뢰 탐지·제거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이 지뢰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98년도부터 2022년까지 201개소에서 7만 발 정도 제거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뢰제거 병력이 많을 때는 1300명, 요즘 600명 정도 투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후방 방공지역 제거사업 실시해서 올해 마무리가 된다, 현재 장애물 관리…… 확인 가능한 82만 발 정도가 매설돼 있다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법안심사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오늘 한기호 국방위원장께서 오찬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했어요. 과연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전통적으로 군이 지금까지 계속했는데 민간이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 또 이 부분을 앞으로 민간이 할 때 사업을 어떻게 계약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민관을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감대가 부족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기호 국방위원장께서 강원도 철원지역에 1년래 굉장히 중요한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여 안 할 수 없어서 떠나면서 국방위원들한테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해서 다음번 회의에서 좀 더 토론하고 또 본인의 의견도 개진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으니까 가능하면 다음번 회의에서 이것 좀 더 심도 있게 하면 안 좋겠나.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법안소위는 가능한 한 다수결로 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서로 협조해서 이게 오랜 전통이고 관례이기 때문에 그래도 평생을 군문에 계신 국방위원장께서 이런 강한 의견을 내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오늘 여기서 의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 겸 이해를 구하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설훈 위원 저도 의견 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98년부터 지금까지 7만 발을 제거했습니다. 계산하면 1년에 몇 발 제거했는지 답이 나옵니다. 깔려 있는 지뢰는 지금 200만 발 이상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에 7만 발을 제거했으니까 앞으로 다 제거하려면 몇 년 걸릴지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서는 부지하세월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감안해서 어느 것이 합리적으로 지뢰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 끝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처방이 된다 이래서 지금 이 법안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기호 위원은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인데 그 판단에 대해서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불행히도 위원이 안 계시는 관계로 해서 이것은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통과를 시키고 상임위원회에 의견이 올라왔을 때 그때 이 법안에 반대하는 위원과 토론을 해 보면 어느 것이 더 정답인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법안소위에서 이것 통과를 시키고 꼭 반대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이것은 상임위에서, 나중에 최종적인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여기 계신 위원들은 크게 반대가 없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방부가 이 안에 동의하고 있고 이 안을 지지하고 있는, 물론 수정안은 아닙니다. 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법안을 늦춰 가지고…… 오늘 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이게 또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안소위에서 상임위로 넘겨 놓고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법안소위에서는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위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제출하셨고 정부에서 법안을 냈는데 전체적 내용이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제정법이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李憲昇 위원 보통 제정법을 하게 되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한 번 해야 되는데 혹시 위원회 차원에서 한 적이 있는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제정법에 대해서.

○국방부차관 신범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공청회는 안 했지만 아까 차관도 얘기했지만 십여 차례, 3년에 걸쳐서 이것은 정부하고 여야 의원 공히 발의가 됐던 겁니다. 민주당만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조금 전에 이채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기호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한기호 위원님만큼 군대생활을 했고 저는 이 법이 절실하다고 군에 있을 때부터 생각을 해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군단장 때도 요구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국회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이것을 발의하려고 하다가 아직 여론이 안 돼서 나중에 발의하면서 토의를 해서 사실은 3년을 끌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에서도 십여 차례를 거치면서, 제가 봤을 때 오늘 국방부차관님이 제기한 여덟 가지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 지금 설훈 위원님 말씀처럼 이 법안은 한번 전체회의에서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 자격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관례가 만장일치로 이렇게 해 왔는데 어느 위원이 안 왔다고 해서 그

위원을 고려해서 통과 안 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점심시간 때 간곡히 얘기는 했지만 거기서도 제가 반론을 제기하려 하다가 괜히 싸울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여야 같이 발의하고 정부도 하고,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물론 이채익 위원님 입장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요. 만약에 이것이 소위에서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아마 21대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진짜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군이 능력이 안 됩니다. 안 되면서 지금 잡고 있던 문제고, 나중에 갑자기 평화시대가 오면 이것을 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것은 한 250만 발 있어요. 지금 82만 발 있다는 설도 있지만 한 250만 발이고 우리 군 공병대에도 다 지뢰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지뢰제거반이 있는데 그 제거반으로 250만 발을 하는 데 제가 이걸 연구해 보니까 196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또 세계 대다수 국가는 사실 이것들을 다 민간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전향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채익 위원님 의견은 저는 아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미루다 보면 이것 아마 21대에는 어려우리라고 보고, 그러면 이렇게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의원들이 22대에 남아 계신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현재 국방부도 이제는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의 업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공병대 운영도 지뢰 제거하느라고 교육훈련을 못 합니다. 진짜. 그 지뢰 제거하는 인원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시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뢰 제거는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1m 전진하는 데도 진짜 노심초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예 교육훈련 자체를 못 하는 형편이라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계속 건의했던 법안이 이 법안이라는 것을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李憲昇 위원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그렇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정부안을 중심으로 이 안을 추진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만 오늘 소위가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산안 처리하고 또 시간도 있고 법안이 남아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더 해야 되고.

많은 의원님들이 제출하고 정부도 제출했지만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부채중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정 급하시다면 상임위 전에 이 대목을 위해서 원포인트로 소위를 잠깐 여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시고 논의한 것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다 같이 있을 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아까 국방부차관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실 때 민간인 지뢰제거 위탁과 관련해서 ‘한기호 위원장님께서 반대하시겠지만’이라고 자락을 깔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송옥주 위원 그런데 이 법과 관련해서는 십여 차례 가까이 관계되는 의원님들과 국방부에서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국방부에서 그러면 이 지뢰제거와 관련된, 민간인 위탁과 관련된 계약 방법이나 운영 방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세요? 설명을 주시면 오해들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설훈 위원 법이 마련돼야 의견이 나오지.

○송옥주 위원 아니, 그래도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허락해 주시면 군사시설기획관이 설명……

○소위원장 김병주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료 배포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예.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지뢰제거자는 군과 민간 대행사업자 둘 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상황은 그 지뢰가 군사적으로 필요한지 안 한지는 군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이 기본이 된다. 외국은 인도적 지뢰제거를 민간 위주로 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상황 속에서는 군이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지뢰제거에 필요한 소요 판단은 군이, 국방부가 할 겁니다. 그중의 일부를 필요시에 민간

사업자가 대행을 한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설명자료의 첫 페이지에 보면 ‘법률 제정 필요성’에 당연히 군사적 필요성이 없어진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라서, 이것을 보통 인도적 지뢰제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뢰제거를 하는데 유엔에서는 IMAS 등의 국제기준을 마련했고 우리도 그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뢰제거 체계가 필요하다, 인도적 지뢰제거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지뢰제거를 하고 나서도 합참의 작전 명령으로 하고 있어서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뢰를 제거한 군인이 책임질까 봐.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또 유실 지뢰가 나와서 토지, 사유재산에 못 들어가게 해도 손실보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셨던 민간 개방의 절차·기준이 없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군 역량의 한계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권익위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대행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인도적 지뢰제거가 국제적으로는 민간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군이 책임지고 하되 필요시 민간 대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민간이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군 내외 소요를 종합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에 넣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지뢰대응활동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민간 대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가 발주라는 형태로 하게 될 것이고요. 물론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발주하는 방법, 대행하는 방법은 만들 겁니다.

그다음에 민간 대행자에게는 자격(장비·인력·자본 등)을 법령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국방부가 관리·감독할 것이며 또 제거가 되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국방부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계약 해지, 과태료, 벌칙 규정들이 필요한 것은 민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법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뒤의 2페이지 보면 체계도가 나와 있는데요.

세 번째에 있는 지뢰제거업무 수행자가 수행주체는 기본적으로 국방부에 두고 필요시 법인·단체가 대행 가능하도록 법안을 만들었다는 걸 다

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과정들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4개 법률안 비교표에서 저희가 이것들을 그동안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뢰제거자의 기본을 민간으로 보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군이 기본적으로 지뢰를 제거하는 데 미래 소요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 대행이라는 체계와 법적 절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주 위원** 설명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더 명쾌하게 이 법이 제정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도, 화성이 다음 달에는 100만이 되는 도시인데요. 남양이라는 데가 시청 소재지가 있는데 거기 무봉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뢰가 매설돼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모르시고 신년행사도 하고 매일매일 산책도 하고 그러세요.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 이러다 혹시라도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늘 걱정이고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여러 차례 논의도 되었고 또 국방부 차원에서 이런 체계도도 만들면서 대응 방안도 많이 마련하신 부분이어서 한기호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위원** 국방부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키맨이라 할 수 있는 국방위원장도 설득을 못 시키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평소에 자주 위원장하고 의견 교환을 많이 했을 텐데 설득이 됐습니까?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위원장님께 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오찬 때 말씀하셨던 우려라는 게 아마, 어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민간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지뢰제거 요구가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군사적으로 필요한 지뢰마저도 제거해야 되는 압박에 처하게 될 거다’ 그것을 우려를 많이 하셨고요.

여러 민간업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저희가 위원회에 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령이 돼 있는데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요. 대행업체 등 이해관계자 제척을, 민간위원들을 명확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게 18대 국회 때부터 법안이 있었는데 계속

폐기가 됐습니다.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는데 만약에 그 민간 대행이 문제라고 하면 저는 어떻든간에 민간 대행을 삭제하고서라도 이 절차와 기준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렇지요.

○설훈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본위원이 이 지뢰제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질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민간이 지뢰제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사례를 봐도 그렇고.

지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채익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5년간 7만 발밖에 제거를 못 했습니다. 군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요. 그래서 민간이 들어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이 안 하겠다는 부분은 국방부가 위원들 설득을 못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지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자, 이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걸 위원장조차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다면 국방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소위원장 김병주 차관님.

○국방부차관 신범철 예, 위원장님.

그러니까 민간을 다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구성하는 실무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계획도 다루고 하는데 거기에 대행업체와 같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게 또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위원장님은, 저는 압니다. 사실은 이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걸 너무 고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 여기에서 어떤 자구 ‘민간’ 이것을 빼라 더하라 하면 다음 소위에서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18대부터 안 됐던 이유 중의 하나는 위원장님의 고집이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절실하고 정부도 절실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위원들이 국방부가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소임이라고 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이걸 다 동의해 주시고 일부 진짜로 문제되는 것만 빼자 이렇게 하면 다음으로 가도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민간 대행, 그러면 지금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걸 빼더라도 일단 민간이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은 해 줘야만이 그다음 가는 겁니다. 위원장님 아까 점심 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게 우려가 된다면 그 항목은 빼고라도 소위에서 올리고 전체회의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절실합니다. 이것은 또 평화 목적도 있고, 사실은 지뢰를 옛날에 대공진지라고 해서 발칸이나 이런 것 모든 데, 대구, 광주 이런 데도 다 대공진지가 무등산 위에도 있었고 그 주변에 방어하기 위해서 지뢰를 다 뿌려 놔거든요. 그래서 나름 제거는 했지만 그것도 군이 하다 보니까 아직도 제거 못 한 지역이 많아요. 민간이 했으면 벌써 지자체가 개발을 해서 거기를 산책로로 쓸 수 있는데 아직도 그런 지역이 많고, 군은 그동안 능력만 없으면서 계속 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혹시 이렇게 하면 GOP 이런 데 자꾸 뭐 요구할까 하는데 그것은 저는 기우라고 봅니다. 국방부가 그런 제도적인 걸 해 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법안에 대해서 간곡히 얘기하는 적은 없는데 이것은 정부안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님도 발의를 했고 여야 의원들이 다 했으니까 소위를 통과하고 국방부안을 다 수용을 하고, 위원장님이 정 그것 하면 민간 부분은 빼 버리고라도 통과해서 일단 한 보라도 좀 나아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위원님이 자꾸 이렇게 간청을 하니깐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충분히 이 법안의 필요성은 이현승 위원님이나 나나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는데, 이 법이 제정법이고 또 제정법은 어차피 우리가 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재정당국과도 공감대가 넓혀져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것 안 한다고 해서 이번 21대에 통과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임기가 내년 6월 말인데……

○李憲昇 위원 5월 말.

○이채익 위원 5월 말인데 선거 이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올 연말, 내년 초에도…… 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면서 법안 심의, 통과하는 국회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기호 위원장도 저하고 조금도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색이 같은 동료 위원이자 국방위원장이 그렇게 또 얘기하고 보좌관을 시켜서 의견을 또 내고 이러는데 오늘 여기서 통과하는 게, 사실 이현승 위원이나 저는 사실 오늘 여기에 동의하기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 동의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단 저도 한기호 위원장하고 충분히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도, 국방에 관련해서 국방위원장이 누구보다도 애정이 있는데 위원장하고 좀 하고 해서 다음번 회의에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오늘 이래 놓고, 그리고 오늘 저희들은 동의할 수도 없고 또 여기에서 ‘소위 통과된 것을 전체회의에……’ 그것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갑석 위원 제가……

○소위원장 김병주 송 위원님.

○송갑석 위원 저는 그냥 다 들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내년 넘어가고 이러면 아무리 저희 임기가 5월이어도 너무 그런 것 같고요. 어차피 11월 달에 저희 예산안 가지고 소위도 하고 전체회의도 하고 그래서 아예 11월 초에 원 포인트로 이것 하나만 가지고 딱 날짜를 잡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잡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때 다수결로 좀 소위가…… 왜냐하면 사실 이 법은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방위원장님 체면을 생각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1명이라도 반대해서 통과가 못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가서 이 법안만은, 사실 꼭 어떤 특정인이 군생활 경험을 하고 위원장이라 하시더라도 다수결로 한다면 얼마든지 다음에 할 수가 있지요. 지금 원래는, 오늘은 좀 체면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하지요.

○李憲昇 위원 소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감안을 하겠고요.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만 사실 한기호 위원님이 18, 19, 20, 21 계속 이어 오신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처럼 오랫동안 국회에서 통과 안 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한기호 위원장이 안 계실 때 하려고 했다면 지난 20대 국

회에 안 계셨으니까 그때라도 국방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다면 통과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온 안들이 굉장히 진일보했으니까 한 번 더 위원장님 찾아뵙고 설득을 하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깨끗하게 저희들 정리를 합시다.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개인 위원을 존중하는 건 좋은데요. 우리 위원회가 한 위원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이게 통과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다 동의하면서 어느 개인이 반대하니까 못하겠다는 그런 논리인데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서 보면 참 웃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차관님 말씀하세요.

○국방부차관 신범철 저희가 11월 초에 해외파병 동의안 관련해서 법안소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한기호 위원장님을 다시 찾아뵙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올리고 그 전에 설득하고, 아마 저는 설득이 잘 안 되리라고 봐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이지요, 민간이 하는 것. 그것은 의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설득하는 데까지 해 보시고 다음 소위에, 여기 참가하신 위원님들은 이 취지라든가 어느 정도 공감은 했으니까 만약에 그때도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잘 안 될 경우는 다수결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법안소위는 가급적이면 이견이 있으면 보류를 하고 가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한 1년 더 남았으면 보류하고 보류하고 계속해도 되는데 21대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성과를, 성과도 그렇지만 이 기반을 국방부를 위해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으로 두 분 나중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위원장님에 대한 그것도 된 것 같고 우리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다음번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노
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 병 주	설 훈	송 갑 석	송 옥 주
이 채 익	이 현 승	한 기 호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병 주
전 문 위 원	천 우 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 관	신 범 철
법 무 관 리 관	유 재 은
보 건 복 지 관	김 은 성
군사시설기획관	천 승 현
전 력 정 책 관	원 종 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 길 성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안 유 진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기획팀장	원 승 구
국 방 정 보 본 부	서 병 국
국방보안암호정책과장	

병무청

차 장	김 종 호
병 역 자 원 국 장	임 재 하

방위사업청

차 장	강 환 석
방위산업정책국장	한 경 수
방위산업진흥국장	김 일 동
국방기술보호국장	권 영 철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	정 규 현
정 책 조 정 담 당 관	신 현 승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이 기 석
인 재 경 영 부 장	
국 방 기 술 품 질 원	이 창 우
품 질 연 구 본 부 장	
기 획 재 정 부	유 수 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	